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韓國의 多文化家庭 支援政策의
改善方案 研究

2011年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blue 'H' shape. To its right,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ight blue, sans-serif font, with 'HANSUNG' on the top line and 'UNIVERSITY' on the bottom line.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桂 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海秀

韓國의 多文化家庭 支援政策의
改善方案 研究

Improving the Supporting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桂 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海秀

韓國의 多文化家庭 支援政策의
改善方案 研究

Improving the Supporting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위 論文을 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桂 仙

金桂仙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6
1. 다문화사회의 개념	6
2. 다문화주의의 개념	9
3. 다문화주의의 이론	14
4. 다문화주의 모형	16
제 2 절 한국의 다문화사회 전개	18
1. 다문화사회의 전개	18
2. 한국의 다문화사회	22
3. 한국의 다문화주의	25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27
제 3 장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현황분석	29
제 1 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현황	29
1. 다문화가정의 기초	29
2. 다문화가정의 욕구	41
제 2 절 다문화가정의 주요 이슈	45
1. 언어와 문화적 적응	45
2. 경제생활의 어려움	48

3. 자녀 양육과 교육	49
4. 친척,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	51
제 4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비교	53
제 1 절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53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57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68
제 2 절 외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75
1. 대만	75
2. 일본	76
3. 영국	79
4. 시사점	83
제 5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4
제 1 절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85
1. 정책 주관부처의 목표 부합 정책 부족	85
2. 맞춤형 행정지원 서비스 정책 필요	88
3. 예산의 중복 지원과 안정적 확보 미흡	90
제 2 절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92
1. 국가 차원의 체계적, 통합적 지원정책 수립	92
2.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	94
제 6 장 결론 및 제언	97
【참고문헌】	99
ABSTRACT	107

【 표 목 차 】

[표 2-1] 행위주체별 다문화주의 유형	12
[표 2-2] 다문화주의 정책 모형	17
[표 2-3] 주요 국적별/ 연도별 외국인 통계(불법 체류자 포함 전체 외국인)	19
[표 2-4] 유형별 외국인통계	20
[표 2-5] 외국인노동정책의 단계별 특징	21
[표 2-6] 주요 국적별/ 연도별 결혼 이민자 통계	22
[표 2-7] 한국의 다문화주의 선택적 해석	26
[표 2-8]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 틀	28
[표 3-1] 다문화가정의 유형	34
[표 3-2] 국제결혼 현황	35
[표 3-3] 지역별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37
[표 3-4] 결혼이민자녀의 연령	40
[표 3-5] 결혼이민자녀의 학교 급 별 취학현황	40
[표 3-6]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고통	40
[표 3-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집단따돌림의 이유	41
[표 3-8]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47
[표 3-9]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49
[표 3-10] 다문화 아동청소년 재학생 현황	50
[표 4-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체계도	53
[표 4-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부처별 소관업무 및 예산	54
[표 4-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56
[표 4-4] 다문화가정 관련 제도 현황	57
[표 4-5]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59
[표 4-6] 사회통합과 평등문화정착 과제별 해당부처	60
[표 4-7]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68
[표 4-8]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69
[표 4-9]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70

[표 4-10]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71
[표 4-1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73
[표 4-1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74
[표 4-13] 외국 사례 분석 결과	81
[표 5-1]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86
[표 5-2] 지역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예산(2010년~2011년)	90
[표 5-3]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인력(광역, 기초 포함)	91
[표 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평균 근무시간	9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한국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4월 현재 110만 명에 이르며 결혼이민자수는 11만 명으로 2015년에 26만 6천명, 2020년 35만 4천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설동훈, 2008).

다문화가정의 유형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결혼으로 성립된 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공단 밀집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많고 농촌지역에는 국제결혼 가정이 많다.

한국은 저 출산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단순 노무직과 생산기능직 노동력 부족을 외국에서 들어 온 노동자들에 의해 대체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여성 등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90년대까지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신 국이 중국동포(조선족), 일본, 필리핀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2000년 이후부터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이주국가 혹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해야 되는 다문화, 다민족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빠른 진전은 사람과 물자, 자본 및 정보가 지구 구석구석을 넘나들고 체류외국인을 급속히 증가시켰다. ‘이주의 시대’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국경을 넘어선 이주가 일상이 되었다. 이제 한국 어디에서나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들의 집단 거주지도 곳곳에 생겨 다인종 ·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쇄국정치와 비-이민국가로서 전통을 중시하고 가부장적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근거로 정체성을 유지해 온 한국사회가 문화와 민족이 다른 외국인을 우리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과 정착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민자

의 나라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나 예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던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오랫동안 인종적 · 언어적 · 문화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 해 왔기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경험이 없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극히 부족하다.

그동안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관광 등과 같은 단기적인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시적 활용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한국 사회의 3D 업종에 대한 노동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본격화 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정책이나 원칙이 없었다. 결혼이민자 여성 역시 한국 정부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국하기 시작했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여성 모두 인종적 편견, 외국인 혐오, 고용주와 고용인의 불합리한 관계,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의 관행적 차별을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이주과정에서의 불법중개, 노동착취, 임금체불, 학대 및 폭력,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부적응 등 여러 가지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인종과 타 국적을 가진 사람의 이해, 관용과 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순수 혈통’, ‘혼혈’이란 용어사용과 그로 인한 특정인종 우월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혼이민자 여성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혈연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로 인해 자신의 출신 국 특성과 다른 문화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이들 자녀들이 성장하며 겪게 될 차별과 편견으로 소외 될 경우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정책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람과 물자, 정보가 지구 곳곳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들의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혹은 한국 사회 일원이 되고자 할 때 이들을 받아들여야하는 경우를 대비한 각종 법률 제정과 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부족하다.

그동안 한국은 단일 민족과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순혈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국

민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로써 한국인들은 단일문화사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한반도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과 도심에 차이나타운이 세워지는 것은 못 마땅하면서도 로스앤젤레스(LA)에 코리아타운이 번성하는 것과 연변 자치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순된 생각조차도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게 하였다.

한국 사회가 외국에 비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한국내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의 외국 진출, 국제교류 증가 등은 더 이상 다문화사회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이를 계속 무시할 경우 호주나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 과격주의에 빠져 주류사회와 소수집단 간의 갈등 유발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 되어 정치적 · 사회적 통합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사회적응문제,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에 따른 이혼율 증가문제, 경제적 빈곤 등 가정적·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은 미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단순 노무직 혹은 생산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와 농촌에서 혼기를 놓친 남자들과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인종차별과 학대, 인권유린, 한국 사회의 부적응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살 등 이주 외국인들 관련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권문제와 생활안정, 자녀의 교육문제 등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사회의 통합 등에 학계와 사회전반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립되고 있어 긍정적인 대응이라 생각된다. 정부의 대책이 초기 단계이긴 하나 각기 다른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를 잘못 판단한 정책이라 여겨진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의 관심이 다문화 가치 옹호에 치중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다문화 변동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 및 자녀에 대한 인종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다문화적 역량이 강조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현실의 다문화 사회 인정과 관용의 차원을 넘어 다문화 정책을 수립·시행 할 때, 다문화주의의 기본 원리와 한국의 민족 정체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문화주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기반인 인간존중과 자유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기본 정신과 이념이며 다문화주의의 핵심인 타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계층 간, 지역 간, 이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통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사회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에 따라 중앙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던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2008년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국의 가족정책관실 아래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2006년 정부의 다문화정책 시행의 선언에 힘입어 다문화 관련 연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연구의 내용도 다문화주의 소개에서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로 바뀌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한 중요 연구를 살펴보면

2006년 조영달 · 윤희원 · 박상철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조사연구, 2006년 설동훈 · 이해경 · 조성남의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 연구 등이 있다. 다문화정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들어내어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외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의 모방을 시도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조금 더 나아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적인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나 이 또한 이주해온 ‘타자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쉬운 것은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 정책이 국가발전을 위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기존의 단일민족주의와의 관계설정은 어떠해야 하며 그 정책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다문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정부 관료주도로 당면한 현실문제 해소 위주의 연구 및 정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겠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다문화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비전이 없거나 지향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기 쉽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화하고 있는 한국이 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지향할 방향을 정립하고 다문화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와 그 내용 등을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 즉, 한국에 적합한 다문화정책의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정책과 외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위주로 하며 다문화주의 및 국내·외 다문화 지원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타당한 부분을 수용 나아가 좀 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다문화사회가 오래전부터 진행 된 미국은 1960년대부터 흑인 및 유색인종들이 사회적 차별 제거를 목적으로 민권운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 했다. 이것을 계기로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고 그 것은 다문화주의의 시초가 되었다.

최근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는 우리나라도 문화적·인종적 다양성 증대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는 바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공동체 등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현상 중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¹⁾

본 장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정리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에 필요한 이론적·방법론적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1. 다문화사회의 개념

문화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문화라는 말이 넓은 영역에서 여러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화라는 단어는 영어의 'culture' 나 독일어의 'kultur'를 번역한 것으로 라틴어 'cultus'가 어원이다. “밭을 갈아 경작 한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위 의미 외에도 “가치를 창조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현재에 문화는 사회적 집단에 의한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느냐 하는 의미를 지

1)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체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의 대통령자문동북아시아위원회 학술용역과제(2007년8월)도 그 중 하나이다.

닌다(최윤희, 2003).

과거의 문화는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들을 문화라 했고 철학, 종교와 같은 고도의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문화라 말했다. 문화는 학문이나 예술, 책이나 예술작품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 삶의 성숙을 가져오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였다.

현대의 문화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바뀌고 있다. 먹는 것, 입는 것, 주거 형태, 스포츠와 레포츠를 즐기는 것 등 신체와 관련된 일과 예술 작품을 생산하고 관람하는 일, 직장 일과 경영까지도 문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문화를 ‘일상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가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대의 문화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위인규, 2001: 8-10).

문화는 한 민족의 생활양식의 총체적 표현으로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인해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귀속감을 갖게 한다. 세계화라는 흐름은 다른 인종 간에 서로 만나고 교류하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급변하는 세계에서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소멸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문화와의 조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즉, 다문화란 세계화를 맞이하여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된 시점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연결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영희, 1997: 295-314)

세계적으로 보면 가까운 중국은 오랫동안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유지해오고 있고 멀리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구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오고 있다. 그 밖에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다인종사회로 유지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일찍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 지속성을 인정하는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서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켜 온 입장에서 최근 들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다인종·다민족화와 이에 더불어 형성되는 다문화사회 현상 그리고 이런 사회구조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용어 개념은 하나의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이라는 이유로 인해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김혜순 외, 2007: 15). 이것은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민족사회 또는 다인종사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의 현상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시대’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고 ‘다문화사회’를 인구현상 적 차원에서 정의하면 한 사회 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인종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Kymlicka(1995)는 다문화사회를 다민족(multinational) 이나 다인종(polythnique)²⁾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인구 중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적 기준은 없다.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인 캐나다나 호주와 비교하면 한국의 다인종 현상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³⁾. 그러나 ‘다인종사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의 기준은 결국 국가별 다인종 증가 현상의 수준을 국가의 이해관계나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Parekh(1999)는 현대사회 문화의 다양성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다문화사회를 다른 신념과 습관을 가진 잘 조직화된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로 두 개 이상의 문화공동체가 있는 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렵다.⁴⁾ 그러나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며 우

2) Kymlicka는 먼저 다문화(multinational)사회는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다양한 문화적 실체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국가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다수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소수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다인종(polythnique)사회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과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사이에서 드러난다(Kymlicka, 1995).

3) OECD 자료에 의하면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이민자 비율은 프랑스(1999년 10%), 독일(2003년 12.9%), 영국(2004년 9.3%), 캐나다(2004년 18.9%), 미국(2004년 12.2%)이다(Lemaitre and Thoreau. 2006).

4) 다문화사회에 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서구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외국이민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형성 이론과 관련 된 두 가지의 다문화사회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사회 내부의 문제보다 외부 요인에 기인한 타인종· 타민족· 타문화가 유입되는 형태이다. 세계화· 정보화의 급속 된 진전은 자본과 노동시장을 보다 빠르게 확대· 이동시키고 국가 간의 물적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각 국가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단기적 · 장기적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다른 인종과 문화의 인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형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대표적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있으며 이들은 처음부터 사회통합 정책을 세워 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다문화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김남국, 2005: 97-121).

우리나라는 두 유형 중 처음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 오면서도 단일민족과 순수 혈통을 지켜온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 사회적 이유에 의해 외국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 외국인들은 정치적 박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사회적 갈등 요소가 적고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 즉, 다문화주의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는 1957년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스위스를 기술할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을 기폭제로 서구사회에서 이제까지의 국가통합정책이던 동화주의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캐나다에서 공식적인 사회통합 이념으로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다인종국가 즉,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주변에 위치 해 있었던 다양한 소수자들과 민족 집단들의 시민권 투쟁운동의 논리로 큰 각광을 받았고 근래 세계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이주민을 수용하게 된 국가인

종, 민족 등 거시적 차원의 논의 뿐 아니라 사회내의 소외계층이나 소수자, 성역할 및 기호의 차이 등 미시적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 된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에 대한 전통적인 통합이념인 동화주의⁵⁾나 문화상대주의⁶⁾ 대한 대안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나라별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 다양하므로 그 형태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의 민족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과거 식민지국가 출신 이주자의 통합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 사용주민의 문화, 언어, 정치적 자치권에 대한 권리주장, 철학, 문화, 예술에서 서양전통의 근본원리를 가르치는데 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Seyla Benhabib (ed), 1996: 17).

1950년대까지 대표적 이민국가인 미국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동화주의의 이념에 따른 것이었다. 동화는 소수자 구성원들이 지배적 다수의 문화에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민자들은 출신문화로부터 벗어나 지배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이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산업화를 거쳐 후기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며 국민들의 가치체계가 물질적 가치에서 탈 물질 가치로 변화하고 사회 소수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와 이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다문화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사회내부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건서, 2003: 29-53).

베르토베츠(Vertovee, 1996)는 다문화주의는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공존하며 각 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만들어내는 ‘샐러드 그릇’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문화적 정체성은 강제와 배제와는 양립할 수

5) 동화주의는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주의를 일컫는다.

6) 문화상대주의는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의 상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주의이다.

없는 개념이자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성을 의미한다(조석주, 2007: 12) 캐나다의 사례에 근거하여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문화주의는 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첫째, 인구학적 측면에서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 내에 상호 다른 문화에 대하여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이념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들의 인종적·민족적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며 모든 개인이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조석주, 2008: 10).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시대와 장소, 집단에 따라 사용하는 맥락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그 개념을 특정 짓기 어렵다. 다문화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정치적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다음의 여러 개념을 살펴본다.

다문화주의는 광의의 이상주의적인 지평에서 “상이한 국적, 체류, 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리플릿, 2006)을 뜻할 수도 있고, 협의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Kymlicka, 2006)을 뜻할 수도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화 시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비국적자 및 체류 자격 미비 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민족국가 시민권을 ‘탈 민족국가’적인 방식으로 재규정(post-national citizenship)하려는 시도”(Soysal, 1994)를 뜻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지향성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요건의 실현을 통해 시도되는 민주주의 심화 프로젝트”(김남국, 2005)를 뜻할 수도,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적인 정치 이념의 경계를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the latest’ism)”(Kelly, 2002)를 뜻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빔밥 문화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가족과 다문화가족과의 융합을 마치 비빔밥이 여러 재료가 어우러

저 특유한 맛을 만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샐러드 볼 보다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주문화가 형성되어 왔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슈화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도 다문화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모선희 외, 2008).

다문화주의는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표 2-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서 국가통합을 이루고자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에 대한 하나의 관리 기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집단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또는 ‘풀뿌리 다문화주의’ 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처지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주장한다(한국사회학회, 2007).

[표 2-1] 행위주체별 다문화주의 유형

구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목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 다양한 국적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관리 - 체류외국인 인권보호 및 사회 통합 강화로 사회갈등 및 비용 최소화 -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문화를 이해·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다문화공생 - 내국인과 이주자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감
행위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정책	-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 체류

목표 대상	여성·외국인자녀, 난민, 외국인인 권존중 고인근로자, 불법체류 외 국인, 국민	외국인
주요 추진 방향	-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 우수외국인력 유치	- 외국인의 인권 보장 -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 결혼이민자가족의 역량강화
주요 다문화 프로그램	-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 한국어 교육, 다문화축제 - 권익증진, 인권보호 -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제점	- 전체 외국인의 1/4인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 -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인구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 정부기관 간 중복투자와 단기적 지원 -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 재정, 인력, 시설 부족으로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활동 어려움 -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 어려움 -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자료: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적“다문화주의”의 이론화」.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
과제 보고서.

3. 다문화주의 이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과 지원정책이 필요하게 된 계기는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일회성 내지 단기적 체류가 아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체류하게 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국민의 일부이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문화적 전통 속에서 다문화 현상은 분명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맞는 대책을 필요로 한다. 미처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념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사회의 이념체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21세기 주요 정책 논의 쟁점은 단연 ‘다문화주의’이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정향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문화정책을 비롯하여 이념적 가치로 논의되는 다문화주의 이론화가 명확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이론화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한국과 서구의 학자나 국가마다 서로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원숙연, 2008). 보편가치일수록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하다(김혜순, 2007). ‘다문화주의’ 역시 ‘다문화사회’라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현상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국가정책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일상적 용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문화에 익숙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현상 적 측면으로 보거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온정적 태도 등 추상적 수준의 개념으로 보고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의미는 각 나라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용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반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첫째, 단순히 현실의 다문화사회를 관용한다는 의미의 다문화주의와 둘째, 종족, 인종, 종교, 문화집단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두 개념의 다문화주의가 혼용되지만 첫째 개념이 현실을 기술하는 개념이라면 둘째 개념은 규범적 주장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국가가 정책적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인종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의 규범적 다문화주의가 전통적인 자유주의로부터의 결별 혹은 최소한 수정을 의미한다는 데 있다. 이는 자유주

의 국가는 종교나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규범적 다문화주의는 바로 인종문화의 영역에서 이 중립성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 왔다.

이런 규범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의 다문화주의’라는 두 개의 질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Arthur Ripstein, 1998).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출발점은 공정성이다.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원주민과 같은 소수 종족이 자율적일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문화적 맥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 즉, 문화권은 문화가 그 문화권에 속한 구성원들에 대해 갖는 권리가 아니다. 문화권은 개인이 특정한 문화적 조건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개인은 문화권 소유자로서 언제나 계승된 문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유주의적 관행은 관용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한은 가해진다. 이 점에 비추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 자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정체성의 정치’에서는 문화자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치의 목적이 표현에 있다고 보고 과거에 무시되어 왔던 집단의 정치적 대표를 보장해야 하고 장기적 문화 보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정책 자체로 보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의 다문화주의’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정책의 정치·사회철학적 근거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특정 문화에 속하는 것을 자발적이라 보고 탈퇴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체성 정치의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기본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거나 최소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집단을 관용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를 이 두 가지의 질적 유형으로 구분할 때 ‘정체성 정치의 다문화주의’에 따르는 여러 정책 제안이 있겠지만,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다.⁷⁾

위의 질적 유형 구분과 다른 다문화주의의 양적 차이에 따른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Kymlicka & Banting(2006: 294)의 분석을 보면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주의를 ‘강한 다문화주의’, ‘온건 다문화주의’, ‘약한 다문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그들은 이민자 통합에 접근하는 다문화주의의 가장 공통적이고 상징적인 정책을 다음 8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법, 법률, 의회의 확약 ② 학교교과에서 다문화주의의 채택 ③ 공공매체와 매체허가 명령에서 종족 대표의 포용

7) 이밖에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코퍼레이트 다원주의’, ‘급진적 다원주의’, ‘연방적 다원주의’, ‘분리·독립 다원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구건서, 2003: 40)

과 감수성 발휘 ④ 복장규정, 일요휴무 입법 등의 면제 ⑤ 이중국적의 허용 ⑥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종족집단 조직의 재정지원 ⑦ 2개 국어 교육 혹은 모국어교육의 재정지원 ⑧ 혜택을 받지 못한 이민 집단을 위한 차별 철폐 조치.

위 정책 중 6개 이상의 정책을 채택하면 ‘강한 다문화주의’, 2개 이하의 정책을 채택하면 ‘약한 다문화주의’, 3~5개의 정책 선택의 경우 ‘온건 다문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강한 다문화주의’ 국가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속하고 ‘온건 다문화주의’ 국가는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이 포함되며 ‘약한 다문화주의’ 국가로는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이 속한다. 또한 Kymlicka & Banting은 ‘강한 다문화주의’ 국가들이 사회적 지출에서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다문화주의 정책이 복지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4. 다문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symbiosis)에 둔다. 1970년대 이후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미국 사회는 이전까지 추구하던 동화모형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이민자 통합 방식을 변경하였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 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이다. 이민자 통합방식은 타문화 · 타언어 · 타종교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 정책으로 파악된다(설동훈 외, 2006). ‘샐러드 그릇’(salad bowl)에 비유(vertovec, 1996)⁸⁾하며 다문화주의 모형에서는 다민족·다문화 통합에 있어 동화주의가 오히려 인종 간·민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소수집단의 문화적·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 들여 소수집단이 그들의 특수성을 버리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주류 사회에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Inggris, 1996; 한승준, 2008). 다양한 문화에

8) 샐러드는 각기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하여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인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를 ‘섞어놓은 샐러드’(tossed salad)라고 부른다. 유사한 표현으로 ‘종족적 모자이크’(ethnic mosaic) 또는 무지개 연합(rainbow coalition)을 사용하기도 한다(설동훈 외, 2006).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적 정체성이라 함은 강제나 배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자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성을 뜻한다(강희원, 2006).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민족 집단이나 소수국민집단, 때로는 원주민 소수집단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과 집단은 자유롭게 결사하여 법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Martiniello, 윤진 역, 2002). 정체성 모델의 전형적 모습은 원주민이나 특정 지역에 장기 거주한 이주민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이자, 캐나다 내 퀘백주의 분리 독립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다문화주의로 해결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⁹⁾. 즉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등장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대두되었다(윤인진, 2008).

위에서의 이주민 정책 모형은 정향성·정책목표·국가의 역할·이주민에 대한 관점·법적 수단 등 여러 관점에서 구분되어 진다[표 2-2].

[표 2-2] 다문화주의 정책 모형

	차별적 배제모형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 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 multicultural model
정책정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 함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려 함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적

9)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퀘백인들이 주류인 영국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이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지만

			통합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 제로 인정	상호존중과 관용
평등개념	차별의 정당성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 의 평등	적극적 조치
법적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 권리의 허용
정주화	불가능	비교적 가능	가능
국적부여원칙	속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 적 허용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사례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자료: 박진경, 2010. 한국정책학회보.

제 2 절 한국의 다문화사회 전개

1. 다문화사회의 전개

국내 외국인의 수가 2012년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중국인유입과 함께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인 3년간 국내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제와 결혼이민자형태의 국내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적 자는 주한 미군과 한국계 미국인들이며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등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2-3] 주요 국적별/ 연도별 외국인 통계(불법 체류자 포함 전체 외국인)

국적/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중국	282.030	382.237	503.427	556.517	555.082
미국	103.029	108.091	112.268	117.986	122.659
베트남	38.902	54.698	71.074	84.763	90.931
필리핀	38.057	48.164	50.873	46.894	45.913
태국	34.188	43.307	47.813	45.198	44.701
일본	39.410	39.410	41.053	51.763	47.718
몽골	22.475	28.392	32.463	32.206	30.674
대만	25.121	25.864	27.040	26.977	27.062
인도네시아	25.599	26.378	26.522	29.913	29.859
우즈베키스탄	13.834	15.380	17.163	21.569	21.249
캐나다	13.302	14.879	16.562	17.752	19.393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통계 <http://www.immigration.go.kr>

위의 [표 2-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인¹⁰⁾ 증가 추세는 2009년 약간 주춤 할 뿐 2005년 이후 매년 10만 명씩 증가하였고 실제로 외국인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매년 1만 명 가까이 증가해왔다.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매년 7천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필리핀과 태국이 많은 수를 보이고 최근 몽골, 우즈베키스탄, 캐나다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4]의 외국인주민의 유형은 재외동포 > 외국인근로자 > 결혼이민자 > 외국인유학생 > 영주자격자 순이다.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통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14.6만 명, 외국인 근로자가 40.4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 수도 3.7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재외동포는 3.3만 명에 이르고 있다.

10) 한국계 중국인 포함

[표 2-4] 유형별 외국인통계

구분		이민자수 (등록외국인+ 국적취득자)	등록외국인			국적 취득자
			소계	동포	비동포	
총계		753.381	691.093	342.823	348.720	62.288
결혼이민자		146.508	102.217	33.038	69.179	44.291
외국인 근로자	단순기능 인력	376.940	376.940	233.065	143.875	
	전문인력	27.517	27.517	727	26.790	
유학생		37.440	37.440	2.660	34.780	
투자자		7.244	7.244	419	6.825	
재외동포(f-4)자격		32.625	32.625	32.625	0	
기타 국적취득자		125.107	107.110	40.289	66.821	
						17.997

자료: 장지표, 2008: 2 ※2007년 말 통계임

외국인노동자는 1987년 중국과 국교수립 후 친척방문 등으로 유입 된 중국동포를 시작으로, 1991년은 필리핀인들의 대거 유입, 1992년은 방글라데시인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 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인 공식수교 후 중국동포의 한국방문이 증가하며 한국 내 3D 직종 인력 난 속에서 중국동포는 취업기회를 얻었고 1990년대 초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인의 유입은 중동 내 노동시장의 변화와 1990년대 초 일본의 엄격한 출입국정책의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인과 네팔인 등 남 아시아인들은 한국건설업체가 중동에 진출하여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아 대만 홍콩 보다 한국을 선호하게 되었다(이혜경, 1997: 508-509).

1990년대 들어 산업연수생으로 약 2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어 2년 이내 체류가 가능해졌다. 취업연수제가 도입된 1998년에는 2년 연수 후 1년 동안 내국인노동자의 자격이 주어져 체류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대책은 산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으며 산업 연수제도를 통한 규제 형 유입 책을 채택해왔다. 2002년의 산업연수생은 약 35,800명인데 비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약 287,600명에 이르렀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약 8할

을 차지하여 정부의 대책이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10%의 적은 숫자의 산업연수생만이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는 기형적 구조였다(강형기, 2002: 16-23).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산재보험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최장 3년까지 국내체재가 가능해졌고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정부 대 정부의 고용 형태를 띠게 되며 산재보험이 도입되고 급여의 수준이 인상되었다. 정부는 노동부장관이 해당 국가의 노동부와 협의하여 미리 채용공고를 내고 기업인은 추천을 받아 국내에서 채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고용허가제는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유사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일본은 일본계 브라질인 수용과 산업 연수제를 병행하고 있다[표 2-5].

[표 2-5] 외국인노동정책의 단계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88-1991	1991-2004	2004-2007	2007-현재
특징	정책부재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일원화
내용	미등록 노동자 대책요망	연수생 저임금, 장시간노동, 미등록 노동자 증가	고용허가제 시행 산업연수제 존속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유지

자료: 오경석 외, 2007: 34 재구성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약 22.3만 명으로 미등록체류 비율은 19.5%에 달하여, 일본 13%, 대만 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이선옥, 2009: 40-43).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작업장 대 폭력, 산재보험 등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단속위주 정책은 계속되어 인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표 2-6] 주요 국적별/ 연도별 결혼 이민자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상 결혼이민자의 증가율도 전체 외국인 증가와 맞물려 크게 높아졌다. 2008년 118,421명에 이르기까지 2000년 이후 거의 5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 왔다.

[표 2-6] 주요 국적별/ 연도별 결혼 이민자 통계

국적/연도	2001	2003	2005	2007
계	25.182	44.416	75.011	110.362
중국 (한국계)	12.172 (9.719)	23.906 (18.405)	45.788 (30.992)	63.203 (36.632)
베트남	264	1.817	7.463	21.614
일본	5.863	7.287	7.741	5.823
필리핀	3.041	4.561	3.932	5.033
몽골	191	602	1.295	2.088
캄보디아	5	17	206	1.919
태국	552	1.137	1.467	1.809
미국	784	980	1.171	1.436
우즈베키스탄	134	571	917	1.208
러시아	262	758	1.059	1.061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통계 <http://www.immigration.go.kr>

2. 한국의 다문화사회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본격화되어 왔다. 초기에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여 탈·불법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해외의 신부들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농촌총각들이 가정을 꾸미고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문화사회가 도래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정

부의 정책 또한 이주노동자정책에서 나아가 이민정책으로 변화되었다.

다문화사회가 더욱 두드러진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및 관련 학자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담론의 활성화는 오히려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리가 원하는 다문화주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주의의 주요 내용이 다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생존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의 지향점이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 다원화 및 다양성에 두고 있기에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보다는 다문화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창되고 있다(오경석, 2007: 51-54).

한편, 학자들은 다문화주의의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음을 강조한다(강휘원, 2006: 장혜경, 2006: 김현미 · 김유미 · 박지현, 2008).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시기에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다문화주의 분석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정희, 2008).

다문화주의의 한국화, 즉 한국적 상황에 맞는 다문화주의 이론 정립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체계적인 설명 보다는 논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한국사회학회, 2007).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이민정책 형성의 핵심주체 그리고 정책의 대상 및 방향 등에 있어서 개별 학자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난민,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외국인, 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시적 다문화주의 이론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강휘원, 2006: 설동훈, 2008).

대신 대부분의 연구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례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겪고 있는 경제적, 법률적, 사회

적 어려움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해결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의 거주 지역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그들의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장혜경, 2006: 101).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렵다.¹¹⁾ 그러나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사회’는 일상적 용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인종 및 다양한 국적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로인한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가 국가 내에 수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는 현상을 의미할 뿐 규범적 개념이나 지향할 목표로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¹²⁾ 수립과정에서 다문화사회가 사회현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저학 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증가와 결혼이민자 2세의 취학 증가 등 현상적 입장이지 지향할 가치로서의 입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법무부,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사회를 사회현상으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다문화사회’는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을 두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법무부, 2008). 이에 반해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보고서¹³⁾에서는 “다문화사회란 언어·종교·관습·가치관·국적·인종·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일컬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 보면 외국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참여하게 하는 다문화주의의 지향성을 볼 수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11) 다문화사회에 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서구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외국인민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제1차기본계획을 최종 마련하였다.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보고서 2008. 11.

제는 귀화 신청시 한국어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해 자격을 주는 정책으로 앞서 설명한 차별적 정치적 의도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의 다문화주의

한국은 단일문화, 단일 언어를 고수해 온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단군 이래 반만 년 간 단일민족을 유지해온 것에 대한 자긍심이 한국인 내면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Kymlicka, 1995; 박병섭, 2006; 황정미 외, 2007).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를 인종차별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속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¹⁴⁾. 또한 100만명¹⁵⁾을 넘어 인종적 다양성과 공존이 급속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주의와 이주경험의 부재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은 지극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에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표방했던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의 관심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종의 다양성이나 다문화와 관련된 의제가 공론화되어 논의되기도 전에 ‘다문화주의’가 정책아이디어로 부각되며 정부 내 혼란은 특정대상에 편중된 부처 간 경쟁과 중복정책을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변동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이민국가에서 등장한 정책아이디어는 현실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 선택적 해석과 적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구체적 분석과 고민 없이 ‘구호’로써 동원된다거나, 이주민의 생존 문제를 문화로 강조하는 낭만적 접근을 비판하거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상적이고 단일한 생명력 없는 불구의 담론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엄한진, 2006; 오경석, 2006; 한경수·한건수, 2007). 또는 “식탁위의 다문화주의”(한건수, 2006) 등 많은 학자들의 비판적 지적을 보면 우리 사회 ‘다문화주의’의 담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다인종 및 다문화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갈등 경험의 부재가 너무 쉽

14)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단일민족국가 이미지와 인종적 우월성 관념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모든 종류 차별금지,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 등을 권고하였다. 2007. 8. 19. 연합뉴스.

15) 2008년 12월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수 1,158,866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8년 12월호)

게 다문화주의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한국사회학회, 2007). 그것은 다인종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 경험이 없어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문화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가 아직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의 선택적 해석 및 적용은 다문화를 수식어로 활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정책의 범주까지 다문화정책의 여러 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표 2-7].

[표 2-7] 한국의 다문화주의 선택적 해석

	선택적 해석	출처
다문화사회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증가와 결혼이민자 2세의 취학 증가 등 사회현상을 의미하며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관심을 둘 만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사회를 의미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외국인정책위원회,2006)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정책	‘일정한 이주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사회통합정책’으로 대체하여 사용함 “사회통합정책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외국인(이민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다루는 정책(개인적 관점) 또는 이들의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사회적 관점)”이라고 정의	사회통합정책 설명자료 (법무부,2008)
이민정책	외국인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의 부여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을 다루는 정책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외국인정책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2008)

	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	--

자료: 박진경(2010)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시민적 태도가 자리잡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civic competence), 문화적 이해 능력(cultural competence), 민주적인 상호문화능력(democratic intercultural competence)을 기본으로 한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일반적 방향이외에 한국사회의 수용 태도에서 나타난 문제에 특화된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장원순, 2007).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 연구들은 전국·도 단위의 정부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 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과제로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주로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여러 측면의 생활실태 및 욕구,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에서는 945가구의 국제결혼가족(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여성 결혼이민자 27명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실태, 사회복지,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지원 방안으로 1)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2)가족해체 예방과 다양한 문화, 가치관의 공존 지원 3)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4)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후속 연구로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아동의 생활 실태와 사회 문화적 욕구 파악과 도농 간 차이 분석을 추가하면서 아동의 사회적응 지원, 민관 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주장하였다(설동훈 외, 2006).

또한 「농촌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농업 인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성을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8). 그리고 지역별 결혼이민자가족 연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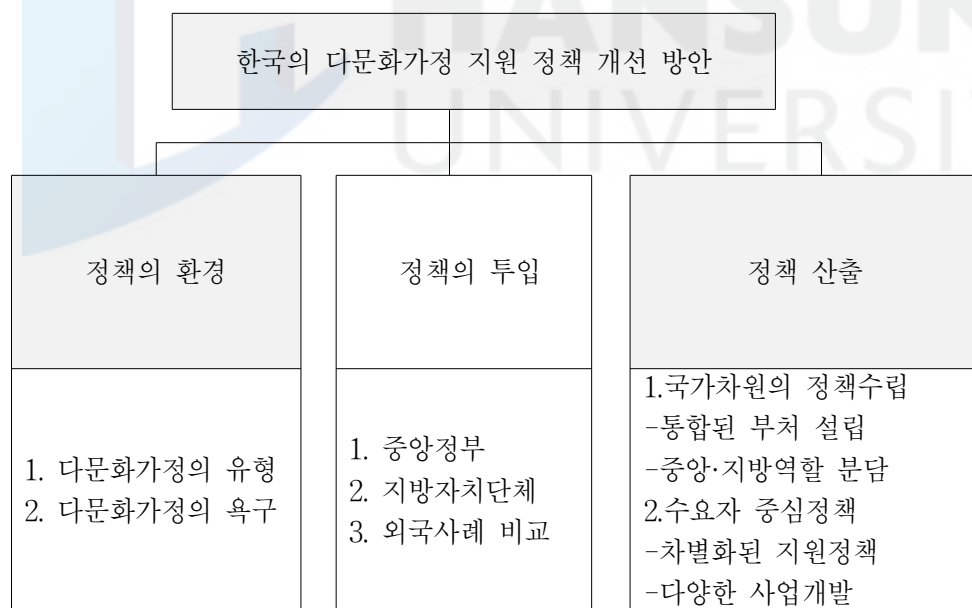
는 경기도(정기선 외, 2007), 충청남도(김영주, 2006), 전라북도(박재규 외, 2005), 경상북도(정일선, 2006)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및 적응(김이선 외, 2006. 김오남, 2006. 양순미·정현숙, 2006. 장은정, 2007. 한건수, 2006), 자녀교육(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영주, 2007. 조영달, 2006), 법적 지원방안(이성언·최유, 2006) 등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으로 외국인에 개한 기본법, 인종차별 방지법의 제정 뿐 아니라 사회보장법 내에서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과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이성언·최유,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현장조사, 자원봉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현행 대상별 지원 대책의 정리와 보완, 전문가에 의한 교육지원 종합대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조영달, 2006).

[표 2-8]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 틀



제 3 장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현황 분석

제 1 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현황

1. 다문화가정의 기초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광의의 개념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새터민 등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는 가정을 말하며, 협의의 개념은 단순한 거주만이 아닌 가족 중 한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정을 의미 한다. 다문화가정은 법률 용어는 아니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한다’라는 의미로써 ‘다문화 가정’은 국제 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 가정 등을 지칭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개념을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이란 세대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정을 말하며, 이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미시적인 다문화현상에 속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조영달, 2006).

또한,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과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 ‘이중문화가정’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가족’으로 불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국제결혼 가족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2세’로 부르고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한겨레신문, 2003).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가족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선거족, 이주민 가족(이주 노동자, 유학생, 새터민 포함) 및 혼혈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가족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중에도 여러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북한 체제가 식량난으로 붕괴될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새터민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오세걸, 2009).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범주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서 혁, 2007).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공관 자녀를 포함시키는 전해도 있다. 즉, 외교관 등 해외공관 근무자 자녀의 경우 그 성장 배경이 일반적인 국내 가정 자녀들과 다르므로 이들도 다문화가정 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박상철, 2006)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뜻한다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된다.

다문화가족법의 정의에서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근로자¹⁶⁾ 가족 셋째,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이탈주민¹⁷⁾(새터민)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의미는 국제결혼에 따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한국 내에서 배우자의 한 쪽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 출신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정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멸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보였고, 이로 인해 학교와 담임과의 거리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2006).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단일인종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내의 복수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며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에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문화 간의 격차에 따른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제 결혼가정으로 정의하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2) 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한국전쟁 직후와 1990년대 이후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우리 역사를 볼 때, 국제결혼은 간헐적으로 존재해 오긴 하였으나 한국전

16) 1980년대 외국인근로자가 노동부가 시행하는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동남 아시아권 국가에서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체류외국인은 증가하여 2008년 3월 31일 기준으로 1,118,495명에 이르고 이 중 미등록 체류자는 20.7%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등의 순이며 중국은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방문취업제 및 결혼이민자가 많고, 미국은 재미동포 및 주한 미군이 많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의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 2008년 7월 외국인주민실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891,341명의 전체 외국인 주민 대상 중 경기도 31.2%(277,991명), 서울 29.2%, 경남 5.7%, 인천 5.5%순으로 기업체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이 지역거주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17)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년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00명, 2002년 1,000명, 2006년에 2,000명을 초과하였다. 2007년 12월 집계된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4,503명, 여자 7,751명으로 총 12,254명이었다.

쟁 직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전쟁 이후 국제결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주한 미군의 국내 주둔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의 여성들은 가난을 피하고자 주한미군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지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과 유흥업계의 종업원과의 결혼이 많이 성립되었다(김대수, 2008).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해외여행, 유학, 취업 등으로 국제 이주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주를 위한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혜경, 2005).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설동훈 외, 2005).

특히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외국인 근로자로 해외 취업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결혼이민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 국가에서도 이러한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빈곤과 실업 속에서 신분 상승의 꿈을 갖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인 미국 · 일본 · 한국 · 대만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교란현상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박은애, 2006).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역사는 근대유학과와 1990년대 초 일본, 하와이, 중남미 등 대규모 농원의 이주노동자들이다. 이후 1980년대 종교단체인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을 통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1990년대 초, 한 · 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동포와 중국한족과의 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 · 중 국교 수립이후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황범주, 2008).

1980년대 초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결혼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1990년부터 이루어진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은 한국 국제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에 조선족 여성들이 유입

된 것은 계급화 된 결혼시장 내에서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한 많은 농촌지역 남성들의 수요에 기반 한 것이며 언어적 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이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남아 여성들은 합법적인 체류의 통로로, 경제적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정유정, 2008).

다문화가정은 한국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노동자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나뉜다. 다문화가정을 가정형성배경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범주화하면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한국사회의 성비의 불균형으로 199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고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중상류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년에는 국제결혼 12,319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7).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생산·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족 구성원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수가 많은 몽골 출신 근로자들은 그들의 유목민 적 성향과 더불어 높은 교육열이 이유이다. 자녀를 동반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유형은 첫 째, 부모의 취업을 위해 자녀와 함께 이주한 경우와 둘째, 본국에서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한 후 여자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다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 혹은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동반하고 왔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남아 있는 가정 셋 째, 외국인 여성이 자녀와 함께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경우이다. 이는 결혼을 위해 이주한 경우와는 구분되는 경우로서 본국에서 남편과 사별 했거나 이혼한 후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인 남자와 재혼한 경우 넷 째, 부모 없이 혼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가정으로서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부모는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한국에서 추방당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자녀는 친척집 등에 맡겨진 경우이다.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 부모가 본국으로 입국하고 난 후에도 혼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김정원, 2006).

또 하나의 다문화가정 유형으로는 새터민 가정이다. 새터민이란 휴전이후 다양한 동기에서 북한 체제와 사회를 떠나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공식적으로 남한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지역 출신 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새터민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와 함께 북한 체제가 식량난으로 붕괴될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이상이 입국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엔 사상 최고의 수가 입국하여 현재 1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

새터민 가정의 첫 번째 유형은 1994년 이후 북한 체제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고 북한주민의 주거지 이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증하였다. 현재 입국자들의 47.0%가 가족단위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탈북자 출신이다(이수정, 2007). 최근에는 중국인이나 조선족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함께 입국한 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신고하고 남한에 정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입국한 후 한국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이다. 최근 들어 여성 이탈 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오세걸, 2009).

하지만 외국인 차별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경제적,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2~3년 이내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 연령에 도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문화가정 2세대의 사회진출이 예상되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명성, 2009)[표 3-1].

[표 3-1] 다문화가정의 유형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탈북자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탈북자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	---	---

자료: 김일곤, 2009.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195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들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유형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국제결혼이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다. 2007년 국제결혼 건수는 38,491건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표 3-2].

[표 3-2] 국제결혼 현황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합계	6,563,208	318,936	4.9	219,290	3.3	99,646	1.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결혼이민자 현황」, 2008.

1990년 이후 2007년까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는 219,290명이고,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건수는 99,646명이었다. 2007년 총 결혼 건수는 345,592건 중 국제결혼은 38,491건(11.1%)이었고, 그 중 29,140건(8.4%)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2003년 이후 국제결혼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중 여성결혼이민자는 88.8%이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11.2%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2006). 따라서 대부분 다문화가족의 구성은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표 3-3], 2006년 말 현재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중 약1/4인 26.6%가 서울에 25.8%가 경기도에 거주하여 인천거주자6.1%까지 합치면 전체의 58.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결혼이민자중 수도권 거주자 비율 78.4%와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있다. 도시거주자의 수가 월등히 많지만 도시와 농촌 인구비율을 감안 하면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3-3] 지역별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지역	계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계	93,786	100	10,958 (11.7%)	100	82,828 (88.3%)	100
강원도	2,408	2.6	133	1.2	2,275	2.7
경기도	24,143	25.8	3,296	30.1	20,847	25.2
경상남도	4,822	5.1	248	2.3	4,574	5.5
경상북도	4,349	4.6	188	1.7	4,161	5.0
전라남도	3,785	4.0	72	0.7	3,713	4.5
전라북도	3,667	3.9	139	1.3	3,528	4.3
충청남도	4,084	4.4	211	1.9	3,873	4.7
충청북도	2,891	3.1	189	1.7	2,702	3.3
광주광역시	1,643	1.8	112	1.0	1,531	1.8
대구광역시	2,641	2.8	253	2.3	2,388	2.9
대전광역시	2,108	2.2	209	1.9	1,899	2.3
부산광역시	4,320	4.6	432	3.9	3,888	4.7
서울특별시	24,992	26.6	4,574	41.8	20,418	24.7
울산광역시	1,464	1.6	102	0.9	1,362	1.6
인천광역시	5,721	6.1	727	6.6	4,994	6.0
제주특별자치도	743	0.8	73	0.7	675	0.8

자료: 법무부, 2007, 『출입국관리통계연보』

3) 다문화가정의 실태

최근 국제결혼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결혼 유형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조창기의 국제결혼은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직후에 다른 민족과 접촉할 수 있었던 소수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되어 간 한국인과 일본여성과의 사이에서 강제적·정략적인 결혼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결혼 성립이 곧 민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로 여겨졌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두 국가 간의 국제결혼은 우리 민족의 열등감을 자극하였고

결국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전수현, 2002).

6.25전쟁 이후 주로 한국여성과 미군 남성들과의 결혼 형태로 빈곤했던 상황 속에서 경제적 안정과 계층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¹⁸⁾

과거의 국제결혼은 우리민족의 역사성 속에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별한 결혼형태의 하나로 여겨졌다.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는 ‘국제결혼’을 단일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리고 쉽게 용납 될 수 없는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의 반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제결혼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통일교사 결혼을 주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통일교는 ‘이상적인 참 가정’을 만들고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종교적 이유를 내걸며 한국의 농촌총각과 일본여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였다¹⁹⁾. 그 후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재개되면서 조선족 여성들은 친척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보다 합법적인 이주를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²⁰⁾

기관과 단체와 관련되어 집단적으로 성사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결혼은 계층적인 의미의 새로운 편견과 차별의 이중성이라는 인식을 낳았다. 모든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종전의 인식과는 달리 국제결혼을 하는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보는 시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선진국 출신 사람과의 결혼은 주변의 부러움과 함께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만 제3세계나 후진국 출신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냉소적이다(전수현, 2002)²¹⁾

이러한 시각의 배경에는 ‘마지즌(margizen)²²⁾’과 ‘데니즌(denizen)²³⁾’으로 구분되는

18) 미군에게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을 이른바 ‘양공주’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녀들을 ‘신데렐라’로 상상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공주가 된다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군과의 결혼이 상징화 되었다(유철인, 1993), 전수현, 2006).

19) 199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총2057명 중 일본여성은 1223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통일교가 주도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가진 통일교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1988년 통일교 신자인 일본인 여성과 공개적으로 6,500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20) 초기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배우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설동훈 외, 2005).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조선족이 85.3%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결혼은 국제결혼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사실상 ‘동족간의 결합’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들의 결혼에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21)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이 이중적인 것을 의미한다. 서구문명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다소 열등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는 반면 제3세계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형태는 그 바탕에 자민족 중심주의와 인종주의 같은 문화 심리적인 경향이 깔려 있고 후진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우월의식을 과시하는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전수현, 2002).

차별화된 시각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들은 전기구화의 흐름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니즌’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주변화 된 범주인 ‘마지즌’으로 구분되어 한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다. 한국 사회 역시 이들의 문화에 차별적 반응으로 ‘데니즌’들의 문화에는 우호적이며 교류를 원하지만, 이주노동자나 아시아권 결혼이민자들인 ‘마지즌’의 문화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현미, 2005)²⁴⁾ 국제결혼에 대한 시각은 민족주의라는 이름하에 응집되고 단결되어 온 한국사회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입장이 바뀌었을 뿐 같은 맥락의 편견과 차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교류 증가로 2007. 5월 기준 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등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 진전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주민 722,686명중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9,80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8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다문화가정 자녀²⁵⁾)는 6.1%인 44,258명이고, 외국인중 국적 취득 자가 7.5%인 54,051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전체 외국인의 6.1%에 불과하나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 19,000명(75.3%) 증가하여 4,000명인데 2020년이면 한국 사회 신생아 3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추정통계가 있듯이 급속히 증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는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로 전체의 92.3% 차지하고 있다.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한국어 활동능력 향상 및 사춘기(12세 이하)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 지원이 필요하다[표 3-4].

22) **marginal + citizen** :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본국을 떠난 이들은 진출국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불법이주노동자이거나 **djEJs** 방식의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는 임시적 이주 노동자이다.

23) **denizen** : 글로벌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러 이동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이 보장해주는 안전망과 사회적 존중감을 즐기는 특권화된 이주민이다.

24) 김현미(2005), 한건수(2006) 재인용

25)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내외국인 사이의 혼인관계라는 국적에 따른 차별적 구분을 내포하여 용어사용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열린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입장에서 최근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혹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공동체로서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남성, 그리고 이주민 가족(노동자, 유학생)이 구성된 가족공동체를 모두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4] 결혼이민자녀의 연령

구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44,258	26,445	14,392	2,080	1,341
비율(%)	100	59,8	32,5	4,7	3,0

자료: 행자부, 2007.

[표 3-5] 결혼이민자녀의 학교 급 별 취학현황 (2007.04. 교육부)

구분	결혼이민가정 학생 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학생 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학생수	12,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비율(%)	100	85,1	11,8	3,1	100	87,9	10	2,1

자료: 교육부, 2007.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수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그들은 다방면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는다. 외국인 아동들이 겪는 고통은 다음과 같다.

[표 3-6]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고통

고통의 경험	전체 (50명)	초 등 학 교 (31명)	중 등 학 교 (19명)
미숙한 한국어(%)	30,0	32,3	26,3
한국어만의 수업진행에 대한 어려움	26,0	32,3	15,8
낮은 성적	16,0	3,2	36,8
따돌림, 놀림, 구타	12,0	16,1	5,3
친구 사귀기 힘 듦	8,0	6,5	10,5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4,0	6,5	-
기타	4,0	3,1	5,3

자료: 권명희, 2009.

우리나라 학생이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은 그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 2005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 해서(29.4%)인 반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그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집단따돌림의 이유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0

자료: 설동훈 외, 2005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56.8%가 「현재 삶에 만족 한다」고 답을 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60%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결혼이주여성 34.8%가 「한국생활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 한국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부부갈등과 문화충돌, 주변 가족의 이해부족 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외로움과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욕구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82%)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이주여성들의 조사(이윤애, 2004)에 따르면 이들이 원하는 주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실(24.3%) 가장 원했으며, 직업 및 기술교육(19.1%), 한국요리교실(16.5%), 한국의 전통 및 풍습, 예절에 대한 교육(14.1%) 순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실에 높은 욕구를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언어능력을 여기고 있으며, 모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언어능력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실과 마찬가지로 한국요리 교실이나 한국의 풍습 및 예절교육에 대한 욕구는 생활과정에서 경험하는 식생활, 명절, 예절 등에 대한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원하고 있었다(이윤애, 2004).

우리사회에서 일반화된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여성들은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과 거리상의 이유로 활동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컴퓨터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영역이 사적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남성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적응 교육이 요구되며, 아내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 한 부부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남편과 시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은 각국의 문화 특히 가족관계와 성별역할구조, 여성들의 활동상 등을 이해하고 이를 다문화 가족 내에 수용하여 발전적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김이선, 2006).

2) 일과 취업에 대한 욕구

결혼이주여성들의 일과 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82%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85%가, 농촌에서는 73%가 취업에 대한 의향을 발강고 있어 취업의 욕구가 농촌보다 도시에서 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설동훈, 2006).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가족의 생계유지

와 자녀 교육비 충당, 자기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본국의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해, 2005).

보건복지부의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2005)에서 도시 농촌 모두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²⁶⁾, 이것은 2005년 5월 내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1%와 비교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9%정도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유형의 절반이상이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2005). 그것은 언어구사가 어렵고, 학력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는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언어소통의 문제와 자녀양육문제(31.5%), 남편이나 시댁식구의 반대(13.5%),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2.7%)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이순형, 2006). 이들은 어느 정도 아이가 다 크고 그 사이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는 취업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컴퓨터 자격증이었고, 조리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을 선호하였으며 이 외에도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아내가 외부에서 취업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농사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았고, 여건이 변화한다면 농업 인력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이순형, 2006, 김영주, 2006).

또한 정부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42.9%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는 현재의 농사품목과 관련하여 더 앞선 기술을 전수받거나 수익이 높은 작물의 재배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형, 2006).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앞으로 적극적인 영농지원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들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6) 국적별로는 중국한족(77%), 필리핀인(73%), 태국(63.2%)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자녀보육에 대한 지원욕구를 살펴본 결과 보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자녀의 한국어 교육, 자녀의 학습 및 놀이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는 ‘방과 후 학습교육’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자녀학습지도와 관련한 정보제공’, ‘자녀의 한국어교육’ 순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김영주, 2006).

외국인 엄마들은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들 또한 되도록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지만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외국인 엄마들은 자녀들의 학습, 특히 국어과목과 국사, 사회 과목 같은 교과목의 학습지도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어 과목은 물론 국사나 사회 과목에 많이 나오는 한국의 문화나 관습 역사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가르쳐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자녀의 학습지도와 생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들의 학습훈련과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여성결혼이민자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체계적, 구체적인 제공이 요구된다.

아동들에게는 자신감 결여와 원활하지 못한 친구관계 등 적응상의 문제를 겪을 경우, 개별 상담이나 또래와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사회적 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긍정적인 역할모델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취약함을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이영주, 2007).

4) 공공지원에 대한 욕구

다문화가족은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18%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82%가 지원

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지원을 받고도 별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경우가 39.4%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지원이 구체적으로 계획 되도록 실행될 필요가 있다(이순형, 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설동훈, 2006)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아내로는 일본 여성이 그리고 가장 인식도가 낮은 외국인은 베트남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여성은 79%가 “정부의 빈곤 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 등을 알고 있었다. 조선족 여성도 50% 이상이 의료비나 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고 45%는 여성 긴급전화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 여성과 베트남 여성은 29% 여성만이 ‘여성 긴급전화’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서 많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교통이 여의치 않거나 가족들의 폐쇄적 태도로 서비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거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심화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보다 안정된 생활을 획득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모선희 외, 2008).

제 2 절 다문화가정의 주요 이슈

1. 언어와 문화적 적응

다문화 가족들은 결혼초기부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짧은 기간에 성립되는 결혼과정으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적 기

회가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공통된 언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조선족이나 영어사용이 가능한 필리핀 국적의 아내보다 우리 사회에서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태국 국적의 아내들과의 의사소통 곤란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그 하나의 예이다. 언어습득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다.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당시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류가 불가능하였고 고립감을 느꼈다고 한다(박주희, 2007).

더구나 다문화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 한국어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를 바랄뿐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6)²⁷⁾. 여러 연구에서도 실제 남편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을 느끼며, 특히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상임, 2004, 김정옥 · 전형미 · 이현혜, 1990; 김득성 · 김정옥 · 송정아, 2000).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다문화 가족의 부부들은 결혼 이전에 겪었던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상호간에 접촉함으로써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차이로 인한 충격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의 경우, 중개업소나 종교단체가 개입되면서 결혼과정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결혼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다 온 배우자를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본인과 문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고 특히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박주희 · 정진경,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기후, 음식, 관혼상제, 의사소통의 규칙 등 풍습과 문화적 차이

27) 국제결혼 부부들의 96.3%가 한국말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남편들은 부인나라의 말을 전혀 구사하려 하지 않는다. 부인이 평가한 남편들의 부인나라 언어 실력은 극히 부진하다.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으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나라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윤형숙, 2004).

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이 다문화 가족의 생활전반에 나타난다고 하였다(양선화, 2004). 즉, 음식문화의 차이,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자녀양육과 교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일상생활영역 뿐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태도, 더 나아가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영역까지 여러 면에서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문화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매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며느리의 업무과중, 남성위주의 문화,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은 사회주의 국가나 모권이 강하나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일상생활방식에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사고방식의 차이는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편과 시댁가족들은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외국인 아내와 며느리가 순응하고 따라야 함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이고 습득하기를 강요한다(한건수, 2005). 그 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외국인 아내와 며느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즉,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한 ‘고맥락 문화’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도 태도도 되어 있지 않다(윤형숙, 2004). 최근에는 이러한 부부간의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상습적인 아내 구타와 폭언, 인격모독 등의 문제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의 이혼현황을 살펴보면[표 3-8], 2007년 총 이혼 국제결혼의 이혼 건수는 8,828건으로 총 이혼의 7.1%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기간이 4년 이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79.9%로 부부간의 초기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A)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B=C+D)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B/A)	1.3	1.3	2.4	3.3	5.0	7.1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남편+외국인 처(C)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총 이혼 대비 구성 비(C/A)	0.3	0.3	1.2	1.9	3.2	4.7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D)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총 이혼 대비 구성비 (D/A)	1.0	0.9	1.3	1.4	1.8	2.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 · 이혼통계 결과, 2007.

2. 경제생활의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100~199만원인 경우가 50%이며, 월 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구 소득의 59% 또는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06). 또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절대 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 2006).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육체노동직과 자영업이 가장 많으며, 남편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외국인 아내들이 한 톨이라도 벌기 위해 취업을 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아내들은 대

부분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결혼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일 년에 평균 3회 정도에 걸쳐 약 150만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남편이 모든 살림과 경제권을 가지고 아내에게는 소액의 용돈이나 필요한 돈만을 지불하는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었고²⁸⁾ 이로 인하여 경제권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11점 만점에 3.8점으로 스스로 ‘하층’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지만, 외국인 아내들은 ‘본국의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는 중간정도는 살고 있으나, ‘보통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는 중간보다 상당히 낮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직 베트남 여성만이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에 비해 더 나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설동훈, 2006).

3. 자녀양육과 교육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06년 2만5천 명에서 2008년 5만8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녀의 연령은 6세 이하 57.1%, 7~12세 32.2%로 영유아가 대부분이다[표 2-8].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수치도 2007년 대비 2008년에 39.6%로 증가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중 초등학교 재학생이 84.2%, 중학생이 11.7%, 고등학생이 4.0%로 아직까지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표 3-9]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구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58,007	33,140	18,691	3,672	2,504
비율(%)	100	57.1	32.2	6.3	4.3

자료 : 행안부, 2008.7

²⁸⁾ 관리방식은 국적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내에서 외국○니 아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선족, 한족, 일본여성이고,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거의 없는 경우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이었다(설동훈, 2006)

[표 3-10] 다문화 아동청소년 재학생 현황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2,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자료 : 교과부, 2008. 4.

다문화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아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비 지원도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면서 오히려 지원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²⁹⁾

대부분의 외국인 아내들은 나이가 어리고 초혼으로 주변의 관계 지지망이 부족하여 주위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박주희, 2007). 다문화 가족에서도 한국사회의 일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이나 교육은 주로 아내의 몫이 되어, 유아기 교육에서부터 학원문제까지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어머니의 경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높지만, 언어능력의 부족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였다. 취학 전까지는 자녀의 학습능력이나 교육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학습이해력의 저하나 학교과제 수행시의 어려움 등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

2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상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여성은 한국에서 2년 이상 머물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주 여성의 가구 전체 소득을 재산정해 보육료 지급 비율을 조정한다. 현재 보육료는 모두 5단계로 나뉘 4인 가구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월 가구 전체소득이 151만원 이하이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고, 월 소득이 199만원 이하이면 80%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국적을 취득하는 이주 여성의 건강에 큰 무리가 없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루 소득을 3만160원씩 산정해 9~13일치의 '추정소득'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는 것. 이러다 보니 실제직업이 없는 이주 여성들도 월 27~39만원을 버는 셈이 돼 결국가구소득이 느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물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하는 것이지만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학력 수준이 낮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이주 여성들의 현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화가정 아동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보이며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영주, 2007).

조영달(2006)은 이주여성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부족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적하면서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어 자녀들의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은 사교육 중심의 한국 교육문화에 대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 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것인지 혼란스러워 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 성장과정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차이가 정체성과 가치관 혼돈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들은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어의 서투름으로 인한 이질감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과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하성 · 유진이 · 이장현, 2007).

4. 친척,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는 실제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사회의 성원이 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외국인 아내들은 자신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곧 ‘한국인’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은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의 범주에 자신들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한건수, 2006). 이웃에 사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이주여성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 자신 또한 이웃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보도를 통한 한국인들의 편견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무조건 돈을 위해 한국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도망을 갈 것이라는 생각, 일방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들의 행동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한국인 남편에게도 확대된다. 즉, “오죽했으면 외국인과 결혼을 했겠는가?” 하고 이들의 자

존감을 떨어뜨리고 무시하여 종종 자신의 국제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김영주, 2006).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가족을 벗어난 친족 망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에 사는 친척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왕래가 없었으며, 심지어 명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더구나 친척의 관혼상제에서 혼자서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대부분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혼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적은 점도 있지만, 한두 번 단체로 참여한 후에는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한건수, 2006).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 역시 명절 외에는 시댁 친척과 왕래를 많이 하지 않았고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도시 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남편의 형제들과 왕래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김현미, 한건수,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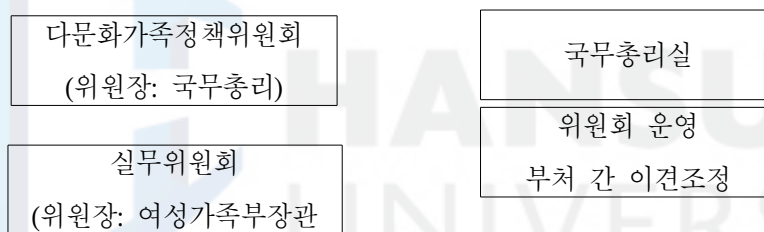
제 4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비교

제 1 절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2008년 6월에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해 9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전국 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하였으며 사각지대 파악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9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2009년 12월에 참여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조정·총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 6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동 위원회 간사부처로써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부처가 되었다[표4-1].

[표4-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체계도



기재부	관련사업 예산 조정 및 지원
교과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개발
외교부	국제결혼 대상국가와의 외교관계 지원
법무부	결혼이민자 입국 · 체류 · 귀화허가 지원
행안부	결혼이민자 생활정착 지원, 지자체 지원기반 구축
문화부	한국어교재 개발 · 보급, 문화교류프로그램 지원
농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
복지부	결혼이민자 사회보장 지원

노동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지원

2006년 부처 합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9년 6월 「다문화가족지원 종합대책」 수립 등 정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민·관 합동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20명)가 국무총리실에 구성되었고, 2010년 3월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 외 9개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각 부처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010년 예산은 국비 약 597억 원,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약 760억 원으로 이 중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예산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표 4-2].

[표 4-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부처별 소관업무 및 예산

구분	대상	주요업무	예산			
			2008년 (본)	2009년 (본)	2010년	2011년 (정부안)
			(총계)	(총계)	(총계)	(총계)
			28,493	42,698	59,690	75,699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지원 총괄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	23,167	25,851	41,087	56,224
법무부	외국인	외 국 인 정	1,530	3,661	4,670	4,788

		책 총괄				
교과부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학생	다문화 가정자녀 학교 교육지원	1,000	6,500	6,200	6,600
고용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훈련	-	80	497	-
행정 안전부	외국인	외국인 주민지역 사회생활 정착지원	469	2,429	820	1,360
문광부	외국인 일반국민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 교재개발	2,327	3,751	5,240	5,551
농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교육	-	426	1,176	1,176

자료: 최영진, 2010.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기관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결혼이민자기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환하여 (2006)21개 소 → (2010)159개 소로 확대되어 수요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다문화가족이 초기 입국하여 적응하기까지 지원을 위해 생활·정책정보 매거진 Rainbow+를 연4회, 9개 국어로 6만 부를 발간하여 해외공관,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배포하고 한국생활 정보가 담긴 「한국생활 가이드북」을 9개 국어로 10만5천부를 발간 배포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가 미숙한 사람을 위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각종 생활·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포털(www.liveinkorea.go.kr)사이트를 4월에 오픈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육성 및 다문화가족역량강화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총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국비센터 159개, 지방비센터 12개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4-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1~4단계 과정 및 특별반)
가족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교육 실시 ·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 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등
가족·개인 상담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취·창업 지원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해당지역의 일자리 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등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출신국별 모임으로 정서적 유대감과 초기정착 강화 · 결혼이민자 지원봉사단 구성 및 사업 활동가 육성
민간자원 활용	· 센터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활동 ·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기관 연계

자료: 이복실, 2010.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1) 보건복지부

신정부의 개각이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주관부처로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등의 부서에서 사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표 4-4].

[표 4-4] 다문화가정 관련 제도 현황

관련제도	해당부처	제정일시 (시행일시)	제도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 가족부	2008.3.21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 가족부	2007.12.14 (2008.6.15)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이용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법무부	2007.5.17 (2007.7.18)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응하여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국적법	법무부	2007.7.5 개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출입국 관리법	법무부	2005.8.4 개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료: 박지영,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2008.

2008년 3월 21일 공포 2008년 9월 22일 시행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정보 제공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역량강화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167억 원)으로 한국어 지도 사를 파견하여 한글교육과 자녀를 위한 맞춤형 아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21억 원)으로 결혼이민자 정보제공, 영농기술교육, 결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10월에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책목표로는 정책대상별로 ①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②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③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④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다. 주 내용은 ①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로 국제결혼 피해방지대책 마련('09년 법령개정 추진) ②다문화가족센터의 통역요원 파견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 ③언어습득 기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사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④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별 교육 강사 파견 등이다.

이 추진과제의 주요특징은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모 자녀프로그램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다양화했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보육 및 성장지원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정책과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5].

[표 4-5]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주 기	결혼 준비기	가족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가족 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기	전(全) 단계
정 책 과 제	결혼중개 탈법방지 및 결혼 예정자 사전 준비 지원	결혼 이민 자 조기 적응 및 다문화 가족 의 안정적 생활지원	다문화 가족자녀 임신·출 산·양육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 달 및 역 량개발 강화	결혼이민 자 경제· 사회적 자 립 역량 강화	해체 다문 화 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 족 보호 지원	다문화 사회 이행 을 위한 기반 구축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정책은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한 2000년대 이후 시작하여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기능을 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주된 정책들은 각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일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내용은 여성이주노동자와 성 산업 유입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과 상담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이들을 위한 쉼터 설치 등이다. 그 후, 2005년 들어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지원 외에 일반적인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적응사업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이선 외, 2006).

제3차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중 다문화가족관련 과제는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이며 이에 대한 소관부처는 [표 4-6]와 같다.

[표 4-6] 사회통합과 평등문화정책 과제별 해당부처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소관 부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문화재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에서 비롯되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①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필요 ②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 대책 마련 ③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이었으며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정책 대상이었다.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에서는 부처 간·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중앙 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0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가와 지방이 추진할 4대 과제로 ①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지원 ②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③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④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여 총 14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총 7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꼴자로 한다. 이는 매년 단년 도 계획을 수립·추진해왔던 이전과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세움으로써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잠재 인력 정책 과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사업은 주로 학교중심의 교육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는 ①교사용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발간·배포 ②시범학교 운영(‘06년 2개교, ’07년 12개교) ③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교재·개발·보급(‘06년 6개, 교육청 23종) ④한국어(KSL)반, 방과 후 학교 운영(‘06년 실적) 등이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국제이해 교육을(10개 교육청)실시하였다.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방안 발표에 따르면 향후 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유치원에 보급함.
- (2)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멘토링 : 국어능력 부진학생의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으로 교과지도·숙제지도를 받게 됨.
- (3)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교생활 안내책자 (한국어 및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다언어로 제작)를 제공하고 「자녀행복교실」을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 (4)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에 개발·보급.
- (5) 교장, 교감, 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 연수 과정’을 개설함.
- (6)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하여 ‘09년 이후 전국 11개 교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함.
- (7)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우수교사·단체를 선정·표창함.
- (8) 교과서에 타문화 이해·존중, 관용 등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

- (9)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
- (10)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촉진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 영상물을 제작 전국학교에 보급
- (11) 다문화교육 관련 수기, UCC 공모 등 다문화교육 체험공모전을 실시하여 사회 전체의 다문화 인식 확산 등이다.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지방문화원 등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과 문화교육 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어·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이 교육은 총 34개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단지 언어교육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나들이, 결혼이주여성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장터 등을 통해 서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왔다. 지금까지 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정리해보면 ① 한국어 교육, 다문화체험 지원 ②이주노동자 종합축제, 문화가이드북 발간, 이주노동자 다문화 청년캠프 ③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④이주민 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2007년 11월에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다문화포럼(2월),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4~5월) 등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이주민의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진흥기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망 구축 등을 계획하였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 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제정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 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 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며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다문화 사회에 따른 문화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5) 다문화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해 한국다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함.
- (7) 문화적 고유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원,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야 함.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함.
- (10)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박물관·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을 설립하고 다문화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 (11) 이주민 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교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하도록 함.
-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에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13)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다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문화가정 관련정책 주관부서는 농촌정책국으로 농촌사회여성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신규 도입과 기초적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세부추진사업은 ①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② ‘우리 엄마의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 찾는 농촌살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의 발간 사업 등이 있다.
- (2)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 실시(’08년) 및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09년)도입을 추진하였다. 세부사업으로 ① 기초 사회적응훈련을 마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중 영농희망과 정착의지가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기초영농교육 실시 ② 지역사회의 여성 영농인을 활용,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적응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계획 등이 있다.
- (3) 농협, 농업연수원,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①모범가구 모국방문 지원 등의 복지 지원 ②다문화여성대학 운영 ③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60쌍)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④보육도우미, 생활상담 등 여성농업인단체회원 중심의 적응 지원 등이 있다.

한편 2007년 1월에 방문교육도우미 관리 기관을 공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 방문도우미 관리기관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방문교육도우미의 선발·기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 기능은 ①방문교육도우미 선발 ②방문교육도우미 기본교육 ③방문교육도우미에 대한 교육자료 지원 ④한국어교육, 소그룹교육 등에 대한 확인·평가 ⑤모범가정 격려행사 지원 ⑥방문교육도우미 교재 지급 ⑦방문교육도우미 유니폼 및 신분증 ⑧방문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제작 보급 등이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문화미래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하였다. 농어촌문화미래연구소의 기능은 인종간의 문화를 접목한 창조적, 선진화된 품격 있는 농어촌문화와 장애우, 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한 복지 향상, 희망, 화합을 이끄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6) 노동부

노동부의 2007년도 ‘여성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세부계획’에서 보면 노동부 소관 과제 중에 직업 상담 및 공공 서비스 부분으로의 진출 지원이 표기되어 있다. 세부 추진 사업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통역서비스 제공,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이다.

2008년도에는 노동부 국장지표 자료에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확충안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의 주관부서로써 위치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4년 12월에 개소되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사업

수준별 학습의 진행,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갖춘 한국어교육,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귀환프로그램의 일환인 PC정비반과 영어, 태국어 등 외국어 진행반을 갖춘 컴퓨터교육, 태권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08년 10월에 외국인 경영자들이 우리나라의 변화된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에서 직접 경영 활동을 하면서 법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노무관리 메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2) 상담사업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업장이동, 비자연장, 강제적립금,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 각종 행사 사업

공동체와 문화행사의 형태로 각 민족들의 고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실시한다. 그동안 실시되어온 행사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예체험학습,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 관광, 박물관 견학, 문화 봉사활동 행사, 한국의 전통놀이·민속놀이 대결, 전통 음식 만들기 대결, 한가위 문화축제, 설날 대잔치 등이 있다.

7) 법무부

법무부 여성정책과(현 여성아동과)에서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및 외국인 신분에서 따른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기존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국적취득, 이혼과 국적문제, 여성관련법률, 상담기관 안내 등에 대한 기본정보가 수록 되어 있다.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 처우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실어 주었다.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07년 5월)하고,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도 시행되었다. 또한 2009년 1월이후 전국 20개 기관에서 시범·도입 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다문화이해 및 이민자를 지원하는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 체계화하여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귀화희망 외국인 및 국민(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5단계 언어과정,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사회 통합 팀의 업무사항은 ①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정책의 총괄 ②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③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④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⑤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이다.

2008년에는 청소년기본법 정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제도화’의 항목안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한 지역에는 지역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센터,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등이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2007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확대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 지위를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정하는 표준 조례안을 명시하였

다.

- (2) 지자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의 세부추진 사항으로 지원 사례 모음집 및 업무편람을 발간·배포하고 실태조사 실시, 우수사례 발표회 등으로 지자체 추진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 (3) 정부 최초의 동남아 여성결혼이민자 부모 초청행사('07년 12월)를 통한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 및 우수사례 전파, 국가이미지를 개선하였다. 추진사업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가정방문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였다.
- (4) 언론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부모 초청행사를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한편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표 4-7].

[표 4-7]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사업분류	세부사업
교육지원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국적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한국인강사(도우미)양성,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등 가족통합교육(결혼이민자여성, 배우자, 시부모 대상 프로그램 부부, 부모자녀 대상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상담 지원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부관계 증진 상담
자녀양육 지원	산 전·후 도우미, 아동양육지원, 공부방 운영, 심리·정서치료 자녀 일시 돌봄 서비스, 엄마나라 문화·언어 배우기
역량강화 지원	정보화교육, 직업(취업)교육 다문화원어민강사양성, 통·번역사 양성
문화정서 지원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 매칭(멘토링)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육성 문화교육, 문화체험, 문화행사 참가
홍보 네트워크 형성	출신 국 문화의 지역사회 홍보 지역 내 다문화 축제, 캠페인 각 관련단체 다문화 교육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수행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8.

1) 경기도

경기도의 사업 내용을 보면 [표 4-8] ①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②이민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업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및 ③다문화 축제 등을 통한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으로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표 4-8]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사업구분	세부 추진 사업
서비스전달체계 확충 및 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및 문화이해 교육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내실화	아동발달 주기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지원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
취업 교육· 상담· 연계 등 취업 지원 내실화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 훈련과정 안내 및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결혼이민자 소식지 발간	생활· 법률정보, 관공서 이용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8.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가족화합 프로그램 및 종합상담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정착에 가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으로 인천시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 지원 사업과 더불어 찾아가는 임신·출산지도 서비스를 통하여 산전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출산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표 4-9].

[표 4-9]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사업구분		세부 추진 사업
한국어교육		기초, 초·중·상급, 연구반 등 총 8개반 운영 한글기초, 일상대화, 다양한 낱말 익히기 체계적 글쓰기, 노래배우기 등 찾아가는 서비스교육-가정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국생활 및 문화체험	한국음식 만들기	반찬, 국 등 한국음식 이론과 실습
	한국문화 교육	생활예절 익히기, 기초 역사 교육
	한국문화 체험	유적지, 명승지 탐방 및 인천시티투어 참여
가족화합 프로그램	가족 교육	남편 및 시부모, 자녀와 함께 하는 강좌 부부 소통법, 다문화 이해, 자녀교육법 등
	가족 모임	국가별 자조모임 형성을 통한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가족 화합 캠프 등	가족화합 야외활동, 가족캠프 실시: 자연체험 게임을 통한 인간관계훈련, 가족 간 의사표현법
아동양육 지원 사업		양육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결혼이민자가정 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동양육서비스 제공: 아동 학습지도법, 생활지도법 등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찾아가는 임신·출산지도서비스		산전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출산준비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8.

3) 충청남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지원 중장기계획을(중기: 2009-2011, 장기: 2011-2020)수립하고 인권보호, 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차세대 지원 등 7개 영역에서 50여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민족· 다문화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부서 T/F팀을 자치행정국장을 총괄본부장, 도의 새마을과장을 총괄지원 반장으로 하여 5개 반(여성결혼 이민자 지원반, 외국인근로자 지원반,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반, 다문화가정자녀 지원반)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개소(공주, 아산, 금산, 부여, 예산)는 국비지원으로 7개소(보령, 서산, 연기, 서천, 청양, 홍성, 태안)는 도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2008년도 다문화가정지원 유관기관· 부서T/F팀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표 4-10]와 같고 총 20개 사업에 8,01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영· 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자체 특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타 시· 도와 비교해 차별화된 정책현황으로 꼽을 수 있다.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과제는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표 4-10]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량	비고
다문화가정 쌍방향 언어· 문화 교육	400명	중앙
다민족· 다문화축제	3,000명	
다민족·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6개 시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 추진	16개 시군	여성가족정책 관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5개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5개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영· 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1,08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12개소	
다국어판 모국어 교재구입	1,500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운영	2개	체육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사업	2개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5개	보건위생과
농촌다문화가족 교육지원	6개	농업기술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지원 사업	10개	교육청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친정방문 및 가족초청	10가정	농업중앙회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종합건강검진	600명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전통음식문화체험	300명	
다문화가정 한국적응 프로그램 운영	16회	새마을회
국제결혼부부 전통혼례	15쌍	
다문화가정과 도민화합 걷기대회	2,000명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8.

4) 전라북도

전라북도 다문화가정지원 정책의 특성 중 하나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농촌문화 적응교육의 생활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과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의 영농지도·생활상담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료보호사업으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예수병원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을 돌며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국적취득 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 등,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를 도내 5개소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권보호 측면 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쉼터) 지원하여 피해자 일시보호 및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을 통하여 가정 복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 시, 군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 전주지청, 도교육청 등과 연계한 결혼이민여성 고충상담반의 순회 운영을 통해 출입국, 취업, 보건·의료, 생활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7개 국어로 된 생활안내책자를 배포하여 한국 소개, 체류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표 4-11].

[표 4-11]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사업구분	세부 추진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문화이해교육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농촌문화 적응교육	생활농업기술, 농촌생활적응 화목한 가정 만들기 등
결혼이민자가족 방문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	한국어 교재 제작·배포 생활안내책자 제작·배포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취업기술교육 등)	체육문화행사, 전통문화 체험 취업기술교육 등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	후견인이 대상가정을 방문, 영농 지도 생활상담 실시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 한마당	가족화합체육대회,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 제공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진료(국적 취득 전 이주여성) 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 지부, 예수병원 등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쉼터) 지원	피해자 일시보호, 피해여성 지원 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가정 복귀지원 등 수행
「결혼이민여성 고충상담반」 시·군 순회 운영	상담분야: 출입국, 취업, 보건·의료 생활안내 등 참여기관: 도, 시, 군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전주지청, 도교육청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8.

5)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사회통합 지원체계의 활성화 사업에 있어 ‘대모 결연 자 어울림 한마당’이나 ‘아시아 음식축제 개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과 여성결혼이민자를 ‘방과 후 원어민 교사 양성’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 지원을 꾀하는 사업은 타 시도와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또한 강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찾아가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이 주2회 이루어지며 미취학자녀와 대학생 결연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10개교 운영에서 20개교로 확대 할 계획에 있다. 이 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 전용 쉼터· 1366센터 운영과 확대, 상해보험 가입 등과 향후의 필요 개선조치로써 전문 인력을 충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눈여겨 볼 점이다[표 4-12].

[표 4-1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사업구분	세부추진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체계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한국생활적응지원시스템 구축 대모 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지원 아시아 음식축제 개최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지원 우리말 공부방 운영 사업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운영” 여성결혼이민자 “방과 후 원어민교사 양성”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강화	찾아가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 전용 쉼터· 1366센터 운영· 확대 상해보험 가입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8.

제 2 절 외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그 성격상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나라들과 유사하다.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정책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다문화현상과 그에 대한 사례를 알아본다.

1. 대만³⁰⁾

대만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대만의 경제적 발전과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확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대만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1998년의 15.7%에서 2003년에는 약32%로 증가하였다.

1987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대만 입국 결혼이민자수는 약 300,000명 정도이다. 중국 및 마카오 출신이 약 65% 정도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출생아 수는 1998년 현재 전체 출생아 수의 약 5%였으나 2002년에는 13%로 증가하였다.

대만 정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증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 12월에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지도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에 수정· 실시하였다. 2003년 6월에는 행정원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및 지도조치 업무 분담 표”를 설치하는 등 관련부서의 자원과 서비스기제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취업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적부여는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험(건강· 재해보험 포함)이 보장되고 체류증이 발급되지 못한 경우에도 기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사회공적부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인 남편이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도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체

30) 대만의 결혼이민자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김윤태· 설동훈(2005)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류 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도 긴급생활부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거나 신변안전에 위협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유입 결혼이민자는 대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많으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언어교육 및 사회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 이민정책은 초기 동화정책에서 문화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대만 정부는 이민국을 설치하고 이민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생활기회 및 기본권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대만 결혼이민자들은 복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참정권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제약 받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차별시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대만의 이민정책에 있어 법·제도적 문제는 대부분 조례나 규칙 등과 같은 하위 법규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집행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편견과 언론, 공무원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다른 문화의 공존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로의 진입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에 당사자인 결혼이민자들의 참여가 부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본

2005년 현재 일본 내에 약 2,200,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일본 인구의 약 1.7% 정도이지만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 100만 명을 넘는 외국인의 수가 15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출신 국은 한국, 조선족, 중국, 브라질, 페루 등 남미 출신, 필리핀 등 아시아 출신 순의 분포를 보인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과 조선족의 비율이 전체 외국인의 약 70%였으나 2005년에는 약 30% 정도로 줄어들었고 중국, 브라질, 페루, 필리핀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일본 내의 외국인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외국인의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국제결혼이 증가함으로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2005년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약 260,00명 정도이며 국제결혼 건수는 약 33,000건으로 1995년의 20,000건보다 약 60% 증가했다.

국제결혼으로 일본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출신 국을 보면 남미 국가 중에서는 일본계 브라질인과 다음으로 중국과 필리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외국인 증가 현상은 1985년 이후 급속한 엔고 현상을 배경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유입되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내의 노동수요에 따른 결과이다. 1990년에 “입관 법”을 개정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증가를 가져왔다. “입관 법”의 개정에서 일본계에게는 특별대우를 부여하여 3대까지 취업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계 노동자들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남미 지역의 일본계 노동자들의 정주화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화와 자본과 노동의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은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타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증대하면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다. 부계혈통주의의 일본 국적법이 부모양계주의로 변화 되면서 결혼 등으로 일본국적 취득이 자유로워진 것도 외국인 수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 중에도 농촌 총각들의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 내 외국인의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 현상으로 외국인 문제는 사회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인권이나 노동조건 등과 같은 문제부터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복지 그리고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까지 광범위한 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이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인 정책이었다. 일본민족의 단일성을 고수하고 외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일본 내에서

이민족의 자체적인 공동체 형성을 경계하였고 따라서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배타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며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³¹⁾ 즉, 1980년대 후반 개정된 입관 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법적인 관리에만 관심을 두고 노동환경이나 생활보호 등은 소홀하였다.

현재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정주화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간담회나 연구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로 2005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내의 외국인 지원은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 외국인 지원의 문제 인식과 대응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외국인 관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그들과의 공생이나 다문화주의의 필요성과 정책화까지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의 외국인문제는 현재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우선 지역사회의 외국인들이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적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그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와 홍보물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 다문화 공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의 기업이나 다른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 간에 외국인 거주자 지원을 위한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39-40).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 시책은 주로 정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특히 재일한국인과 조선인이

31) 199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외국인들의 대량 유입에 따라 외국인대책의 일환으로 후생성에 의해 의료부조의 적용범위를 합법적 신분을 보유한 외국인 거주자까지로 확대하였고, 건설성에 의해서는 공영주택 구입 시에 국적요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문부성은 공립 초·중학교에 국제교실을 설치하고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대부분 “대책”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연구보고서, 2008. 6-7).

많이 거주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등을 통하여 ‘외국적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조현미, 2004). 구체적으로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시의 행정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각종 정보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들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문화와 공생할 수 있는 다문화공생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각종 연금제도를 소개하고 이들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위원으로 시정에 참가할 수도 있다. 외국인을 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하며 시공무원들에게 다문화공생에 대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41-47).

3. 영국³²⁾

2001년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는 약 4,80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이다. 이들의 출신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영연방 소속의 국가 출신이며 기타 중국인과 아프리카 흑인 등이 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시작되었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유럽인을 유입하려고 하였으나 서인도제도와 인도대륙으로부터의 유입이 많았다. 이렇게 외국이민자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영국이 과거 대영제국으로서의 영광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영연방국민의 대규모 이주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으로부터의 이주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와 문화도 달랐다.

그러나 1962년 영연방이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외국인 이민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의 이민정책은 1960년대 초까지는 자유방임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영연방국가 출신의 영국이주를 묵인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영연방이주민법을 통해 이주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 결과적으로 이민자 수가 급감

32) 영국의 사례 분석에서는 영국정부의 구체적인 결혼이민자정책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럼에도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영국정부의 정책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 꾸준히 늘어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영연방의 본국으로서 영국의 포용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영국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도출해 하였다. 그것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정책이었다.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 개념을 결합한 형태로서 개인들은 동등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들을 가지는 한편, 종교와 가족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의 개인적 권리들을 간직할 수 있었다. 다문화주의정책의 원칙은 차별을 방지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다문화인종 사이 또는 주류사회와 소수인종 사회의 우호적 관계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여 영국문화로의 동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가치들을 공유할 것을 유도하는 통합정책이었다.

통합정책의 핵심은 영국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법의 지배, 관용, 동등한 대우, 국가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경 등 영국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변화는 최근의 이슬람 이주민 2세, 3세에 의한 자살테러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자유방임이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 내지 비판을 수용하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정책이 자칫 동화주의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은 일련의 법적·제도적 정책을 통해 차별적 요소의 제거와 인종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런던테러가 있기 전까지는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인해 다문화주의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영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는 지역적 그리고 지방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자발적인 단체인 ‘인종평등위원회’(the Race Equality Councils)가 다문화주의의 확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지역 내에서 이민자를 관리했던 기구는 ‘공동체관계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uncils)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민자 문제가 지방정부의 업무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들 이민자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로서 정당의 주요 지지기반(특히 노동당)이 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이

들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방식이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통치방식이어서 영국 내의 다인종·다문화화를 관리하는 방식도 지역차원에서의 자율적 관리방식을 택하였다. 다문화주의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지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외국인 집단정주가 특정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더 적합하였다. 즉, 지방정부가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민자가 집단적으로 정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이들의 통합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정희라, 2007: 13).

[표 4-13] 외국 사례 분석 결과

구분	대만	일본	영국
결혼 이민자 현황	· 약300,000명 (1987~2003년) · 중국 및 마카오 출신이 약 65% 정도로 다수를 차지함	· 약 260,000명 (2005년) ·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수이며 중국과 필리핀 여성이 다음을 차지함	· 영국 거주 이민자 수는 약 4,800,000명 (2001년) ·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등 옛 영연방 출신이 다수를 차지함
시대적 상황	· 경제적 발전과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증대로 이민자 증대	· 1980년대 중반 일본 경제의 호황으로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 · 1990년대 들어 외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고 일본 국적법의 변화로 일본 국적취득이 자유로워지며 외국인의 정주화현상이 두드러	· 2차 대전 이후에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허용 · 1960년대 초까지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키고 대영제국으로서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영연방국민의 이주를 허용 함

		졌고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	· 1960년대 이후에는 이주민법을 통해 이주를 통제
이민 정책 내용	· 결혼이민자의 취업권 보장 · 사회보험(건강 및 재해보험)의 보장 · 저소득층에 한해 공적부조 실시 · 사회적응을 돕는 서비스로 언어교육 및 취업준비교육 등을 실시	· 1980년대에는 외국인의 법적인 관리에 주력 ·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거주자들에게 생활보호나 기타 행정서비스 그리고 각종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지방정부 주도의 교육 및 주택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가치(법의 지배, 관용성, 국가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경 등)를 공유할 것을 포함
특징 및 문제점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적취득이 어려움 · 대만의 이민정책은 초기에는 동화주의 정책을 사용하다가 점차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 ·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 · 결혼이민자정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전통적으로 일본의 외국인정책이 배타적이며 소극적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화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활발히 이루어짐 · 예) 외국인에게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시정에 참여케 하며 공생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함	·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종관계를 개선하며 대신 영국의 가치를 공유할 것으로 강조 · 자칫 이러한 통합정책이 동화주의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자율적인 관리방식으로 이루어짐 ·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과 지방 정부의 자율과 책임 에 의해서 이루어짐
--	--	--	---------------------------------------

자료: 조석주, 2008: 48-49.

4. 시사점

외국인이민자정책은 각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각국의 외국인 유입 배경과 현황이 다른 이유는 그들 상황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의 내용과 실천 방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사례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문화주의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보다 지방정부나 지역의 자발적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택되고 실시되며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협력하는 운영시스템을 유지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정책은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사례는 결혼이민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다문화주의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보장되며 국민들로부터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높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어느 사회나 질서유지와 국민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 다문화주의가 자칫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정책 즉, 다문화가 공생하는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또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제화와 개방화이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외국인의 국내 정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2년 약 3만4천여 명에서 2008년 5월 현재 약 14만4천여 명으로 6년 사이에 약 4.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체류 자격에 따른 신분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 및 정체성 문제, 가정불화 및 이혼율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여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도입했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 이외에 또 다른 정책문제 해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영역에서 정책적 문제나 과제들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문화정체성을 고민하는 관점에서의 정책은 부족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한국 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결혼이민자 모국의 문화, 언어, 풍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서로 간의 이해가 아닌 일방적인 융화정책이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도 관련이 있다. 각 부처의 지원도 획일적이고, 상위하달 식으로 지역의 특색, 다문화가정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 해 왔다.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중앙과 지방자치와의 연계체계 구축

이 미흡하고 각 부처 간의 적절한 조율이 부족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각 부처의 서비스가 집중되거나 다른 지역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그동안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주로 언어, 사회문화 적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직업 교육 및 취업, 인력활용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 양육 상담, 사회· 문화적응 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면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 따른 결혼이민자여성들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정책보다 대부분 대동소이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이 주로 언어 및 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의 입장에서 경험 부족과 어려움보다 기존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지원 정책이 많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정보의 부족, 가족의 반대, 교통불편 등 일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중복 지원되거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기관들의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고 지자체 특화 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추가 지원 없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1 절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정책 주관 부처의 목표 부합 정책 부족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부처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부처들이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목표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본계획 하에 부처의 세부계획이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2012년까지 각 부처가 할 일들을 취합·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 담당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어 법무부는 다문화정책을 이민, 국정관리 차원의 정책으로 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문화부는 문화적 다양성 증진 정책 등 부처마다 이해하는 내용이 달랐다. 정부 부처별·분야별로 단기적 필요성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외국인에 대한 온정주의 또는 산업수요에 대한 일시적 방편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정 지원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며 단기간·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중복적이고 한국어 교육 및 사회·문화 통합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 간역할 정립을 통해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관 간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들은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부(한국어 교육, 정착지원서비스, 이주민과 정주민의 사회통합업무)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지원 사업을, 문화부(한국어 교재 개발, 강사 양성 업무), 교과부 등 서비스 부처가 수행하고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입국 업무와 국적취득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표 5-1].

[표 5-1]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담당부처		지원사업
주관	협조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국제결혼당사자보호, 언어·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생활정착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적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식개선, 다문화 가족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모성 보호가이드’발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설립, 쉼터설치
	지방자치제 시민단체	시·군·구 단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지정·지원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2006년51개소개설),자원봉사참여유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제	한국어문화교육, 무료 건강검진 및 복지 상담 사업시행 중, 생계·의료 지원 및 생활정보제공,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발간, 저소득가정 산모 도우미 파견, 빈곤층 혼혈인에 대한 생계·의료·주거지원, 건강보험가입안내, 외국어리플렛제작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방지, 체류자격 불안 해소, 이혼 후 2년 이상 영주자격 부여, 거주 자격 있으면 자유로운 취업 허용, 결혼 이민자 영주권 신청 조건 완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 북’ 발간,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립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제	자녀학교생활적응지원, 방과 후 학교·방과 후 멘토링,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반영, 다문화 교육교사 역량 강화 및 교사 혼혈학생 1:1 후견교사제 계획, 가정학습용 컴퓨터 동영상 우송 계획,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설치
	여성가족부 EBS	한국어 및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정보통신부	-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이 다문화 여성대상 IT 활용 한국어·한국문화교재개발
문화관광부	지방자치제	국어문화원, 지방문화원 한국어교육, ‘외국인노동자 문화 가이드 북발간’ 한국어강좌 개설 및 운영 지원, 이주 여성자녀 한국문화 체험행사, 다문화축

		제 지원
농림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제	방문교육-언어·문화교육, 다문화여성대학, 농촌 국제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농어촌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노동부	여성가족부	일자리아선 및 훈련지원, 고용서비스강화, 통역서비스제공,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교육·생활상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제	여성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행사, 국내 거주 및 장기체류외국인 지방선거참정권부여, 내국인과 차별 없는 사회복지정책 개선, 언론·실태조사지속적 홍보

자료: 김범수 외,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2007 (재구성)

2. 맞춤형 행정지원 서비스 정책 필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조정·협력의 역할을 맡은 국무총리실이나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소관 사업들을 조정하거나 사업 주체간의 협력을 유도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것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가 각각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동일 대상에(결혼이민자) 대해 유사한 서비스(한국어 교육)를 실시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 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³³⁾을 체결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 및 사업 중복의 가능성이 줄었으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협력과 조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혼혈인 및 국제결혼가정의 복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세의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결혼이민자 문제가 다인종 다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중앙부처가 관여하고 있

33)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는 ‘한국어교육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2010.6.9),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국적취득 시의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게 됨.

으나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부처가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결혼이민자 관리·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통합·관리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며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부족 현상으로서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만든 행정과 생활정보 제공, 한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할 외국인 상담 창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추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출신국가별, 지역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학습능력개발, 경제능력 배양, 가족 지원 등 사회적응 지향적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역할과 업무가 불분명하여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촌이민자의 조기 정착 사업은 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사업)와 농림수산식품부(농촌 결혼이민자지원)가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칸막이식사업 추진 또한 문제로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타 기관에서 받은 한국어교육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국적 취득 시 면접 심사 면제)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결혼이민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녀를 맡기기 어렵다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법무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 다문화정책을 위한 자도자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예산의 중복 지원과 안정적 확보 미흡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200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추진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을 명시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제시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배분비율을 명시한 법정사업(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하나로(법 제32조 제3항 제3조), 사업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정착·자립지원,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정부가 이 정책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한 것은 모순이다.

한편, 지자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0년 기준 광역과 기초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총예산 규모가 436억 2,900만 원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표 5-2].

[표 5-2] 지역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예산(2010년~2011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년 예산	1,093	425	404	324	780	722	377	2,322	17,137	6,242	1,988	1,740	2,243	3,350	4,414	70

자료 : 이해승, 2010.

지자체의 다문화정책 관련 인력과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며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사업이 산발적으로 집행되어 혼선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7개에만 다문화가족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관련부서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³⁴⁾ 집행 인력 역시 공무원 1인당 지원대상은 많게는 5천 명을 넘고 있어 충분하다고 볼

34) 행정안전부 업무는 자치행정과, 여성가족부 업무는 여성가족과, 고용노동부 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수행

수는 없다[표 5-3].

[표 5-3]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인력(광역, 기초 포함)

	총담당인력(명)A	지원대상(명)B	공무원1인당지원 대상(명)B/A
서울	11,36	57,325	5,051
부산	7,46	13,477	1,807
대구	5	9,166	1,833
인천	6,3	18,573	2,580
광주	3,7	6,247	992
대전	1,9	6,736	1,821
울산	7,2	6,171	3,248
경기	31,9	77,012	2,414
강원	9,1	8,324	915
충북	12,2	10,311	845
충남	8,8	15,599	1,773
전북	18,6	12,863	692
전남	13,5	15,339	1,136
경북	21,1	16,603	787
경남	9,65	19,995	2,072
제주	0,6	2,894	4,823

자료: 「2010년 지자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여성가족부, 2010. 1. 1. 0시 기준

* 「총 담당인력」은 여가부가 파악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인력 현황 자료를 재구성

* 「공무원 1인당 지원 대상」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그 자녀의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인 경우와 부모 모두 한국인인 경우 등의 합을 총 담당인력 수로 나눈 값임.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과 전담인력 2인(거점센터는 전담인력 1인 추가)³⁵⁾을 두는데, 국비지원 159개 센터의 센터사업종사자 및 방문교육사업종사자 수는 432명(센터당 평

35) 이 인력으로 5개의 기본사업(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과 기타사업(통번역 자조모임, 협력네트워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 홍보), 센터의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

군 2.7명, 퇴사자와 채용예정인원 제외)으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재직자의 63.4%(274명)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표 5-4].

[표 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평균 근무기간

근무기간	1년 이상	1년~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총계
인원 수(비율)	158(36.6%)	202(46.7%)	72(16.7%)	432

자료 : 2009년-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현황(2010. 10. 4 현재)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제 2 절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 방안

1. 국가 차원의 체계적, 통합적 지원정책 수립

1) 정책지원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부처 설립 필요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인 교육청, 농협, 새마을단체에 이르기까지 유사시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관심과 실무위원회 및 총리실의 노력이 필요하며 주무부처의 총괄·조정 역량의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업추진 실태 및 유사·중복사업 현황 등 기본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부처 간 지원 정책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과 갈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 담당부서와 결혼이민자 담당부서의 분리에 따른 외국인종합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중앙부처에서 외국인관

런 업무와 관련 출장 및 업무 협조를 부탁하였을 때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경우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부처의 지침 전달 시 문서보관소에 서 어느 부서로 서류를 전달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주관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부처의 설립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다문화가정의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 발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및 협조 체계 확립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체제를 확립하여 중앙부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수요 분석과 자원 배분, 서비스 개발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의 특수한 서비스 수요 발굴 및 추진, 수혜자별 종합관리체계 마련, 지역 내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정책은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줄 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국제결혼중개 관리,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자녀양육·교육,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사회적 자립,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등 관련 사업들이 복합된 정책이므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 파악된 다문화가정의 지초 현황 등의 자료를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간기관 간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통합네트워크 구축도

역할분담과 협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며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 및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된 부서와 사업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놓여 소외되는 다문화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체 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재정적 유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네트워크 구축,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 교육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과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적정 업무량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2.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

1)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다양한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발굴뿐만 아니라 개선 및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방식 적응의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고려하여 마련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시행하여 자존감을 고취하고 출신 국, 언어능력, 사회경제적 지원 등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활·자립 지원 프로그램(직업 및 영농교육)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족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을 활성화하여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의 각 시기 별 필요한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특화하는 정책은 전 시기에

결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며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는 결혼이민 이전 단계에서 철저한 예비교육을 통해 정착 초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 중개업자의 협조 등을 유도하여 결혼이민 가족을 파악하고 가족의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등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는 높다.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 이해 등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을 만큼 충분히 한국어를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교육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 강사의 자질 개선과 강의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수준 높은 단계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어 온 다문화가정 교육서비스는 ‘맞춤식 한국어 방문교육’처럼 방문사업으로 실시되기도 하나 이외의 각종 다양한 교육들이 복지기관 등에서 집합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불편한 교통, 장거리 이동 등이 교육의 장애 요인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접근성이 높은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고 교육교재, 강사교육 등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2) 다양한 지원 사업의 개발 및 보급

지금까지 추진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찾아가는 서비스’가 추가되며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최근 자조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정책의 초점이 이동되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정의 언어·문화적 적응 외에도 인권, 사회적 지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등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저 출산·고령화시대의 중요한 생산 인력이며 국제화 시대의 중요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지원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중 교육관련 사업들은 지역의 평생교육관을 통하여 상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내의 각종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지역의 교육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의사, 간호사 및 의료직 전문가, 조리사, 이·미용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은 훌륭한 인적 자원들로서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다문화가정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문화가정 담당부서의 독자적인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글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글교육지도사 지원, 한글교실 등이 있고 아동양육지원 사업, 다문화교육이해사업, 전통교육 등이 있다. 위 교육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구분 없이 한글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신 국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및 제언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더 자세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 실태와 사회통합 및 이주민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외국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법률적·정책적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이 현실의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그것이 한국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정책당국 중심이 아닌 다문화가정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 당사자의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태도 변화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책 주관 부처의 목표 부합 정책의 부족 둘째, 맞춤형 행정 지원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고 셋째, 예산의 중복지원과 안정적 확보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의 체계적, 통합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통합된 하나의 주관부처를 설립하여 업무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지원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일부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들을 재조정하고 재정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는 각 지역의 특색과 다문화가정의 욕구·문제점 등을 고려한 우리사회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며 2세 자녀들은 사회의 중추로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할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을 통한 제도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 정책도 다문화가정 중심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새터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형기, “자치단체의 외국인행정: 지방의 국제화와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지방행정」, 581(51), 16-23. 2002.
-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20(2): 5-34. 2006.
- _____,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2007년 한국행정학회 · 구미시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96. 2007.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급별 현황자료”. 2008.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업무보고”. 2007.
-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90). 29-53, 2003.
- 권명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교육적 비전”. 「2009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 김갑성,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김남국,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 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97-121. 2005.
- 김대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 김범수 외,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 서울삼성문화재단. 2007.
- 김영주, “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6.
- 김윤태· 설동훈,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정책”, 중소연구 107호, 143-187. 2005.

- 김이선 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 _____,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_____, “농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2008.
- 김일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정옥·전현미·이형혜, “아내학대와 관련된 변인파악 및 아내학대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 연구소 여성문제연구 18」. 1990.
- 김정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문제와 다문화교육”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 2006.
- 김현민·김유미·박지현, “다문화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2007.
- _____,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36-71. 2008.
- 마르티니엘로(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아카데미」. 2002.
- 모선희 외,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8.
- 박병섭,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학」. 12:99-126. 2006.
- 박상철,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실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공동 주최 연구발표회. 2006.
- 박은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박지영,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2008.

- 박진경,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3호. 259-420. 2010.
- 법무부, 출입국 관리통계연보. 2007.
- _____,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보고서.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결혼이민자 현황. 2008.
- 서혁,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제12집. 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7.
- 설동훈 외,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제11차 시민사회포럼. 2003.
- _____, “국제결혼이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_____,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설동훈,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비교”. 「일본연구논총」(21) 201-203. 2005.
- _____, “선진외국의 다인종·다문화 정책 사례”. 「월간지방의국제화」. 2006.
- _____, “한국사회의 소수자문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 주최 국정과제 기획토론회 자료집」. 2008.
- 양기호,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비교”. 「동북아정부연구학회특별세션」. 한국행정학회. 2008.
- 양선화,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 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자료집. 2004.
- 양순미·정현숙,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2006.
- 양애경·이선주·최훈석,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엄한진,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45-73. 2006.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2010.
- 오경석 외,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
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1-56.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오세걸, “다문화가정의 지원 실태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회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정부합동. 2006.
- _____, 외국인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정부합동. 2007.
- _____,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부합동. 2008.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
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29-50. 2008.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42(2):72-103. 2008.
- 윤현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 위인규, “통일교 청년문화운동 정립을 위한 한 연구: 건국대학원리연구회와 한국대학생
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선문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10. 2001.
- 이복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계간 「감사」 가을호:14-18.
2010.
- 이선옥,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 명동성당
농선단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5.
- 이수정, “제3국 체류 탈북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 제언”.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방
향 탐색」. 2007.
- 이순형,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방안”. 농림부. 2006.

- 이영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 이혜경,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논집」, 제31 508-509. 가을호. 1997.
- 이혜경, “한국의 국가발전 정책과 이주정책의 상호보완 가능성”. -결혼 이민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 용역과제 최종결과 보고서. 2005.
- 장영희,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여자대학논문집. 35. 295-314. 성신여자대학교, 1997.
- 장원순,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다문화교육의 과제”. 2007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 「한국 사회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과제 자료집」. 24-48, 2007.
- 장지표,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다문화통합사회 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4-69. 2008.
- 장혜경,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실태와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연구」. (5). 97-110. 2006.
- 전수현, “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정기선 외,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여성개발원」. 2007.
- 정유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 정일선, “국제결혼가족 및 아동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 정정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8.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다문화청소년이해론」. 양서원. 2007.

- 정희라,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이화사연구」. 제35집, 1-27. 2007.
- 조석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10-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조현미, “다문화시대의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8.
- 주효진, “아시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추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8.
- 최금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005.
- 최영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과 감사원의 역할. 계간 「감사」 가을호: 34-38. 2010.
- 최윤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국제협상」. 서울 커뮤니케이션, 2003.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 지자체 외국계 주민현황”. 2010.
- 통계청, “2006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2006.
- _____, “인구통계연보”. 2007.
- _____,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7.
- 한건수, “현대한국사회와 다문화주의”. 인권재단 포럼 발표문. 2006.
- 한겨레신문, 2003년 12월 3일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07.
- _____,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 행정안전부. 2008.
- _____, “2010년 지자체 외국계 주민 현황조사결과”. 2010.
- 한경구·한건수,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서. 「한국적 다문화주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2007.
-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보고서. 200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의 국제화포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39-40.

_____, “지방의 국제화포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41-47.

한승준, “동화주의 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호: 99-126. 2008.

황범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2008.

황정미 외, “한국인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홍기원, “이주민 관련 문화 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2008.

2.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b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t.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청, <http://nos.go.kr>

한국여성재단, <http://www.womenfund.or.kr>

3. 국외문헌

Arthur Ripstein. Multiculturalism.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ersion 1.0, London/New York: Routledge. 1998.

Inglis. C., Multiculturalism :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s 4. UNESCO. 1996.

Kelly, P. (ed). Multiculturalism reconsidered: Culture and equality and its critics. Polity. 2002.

Kymlicka, W. & Banting,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294. 2006.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 Press. 1995.

_____,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장동진 외 역) 파주: 동명사. (원전은 2002에 출판). 2006.

Lemaitre. George and Cecile Thoreau, Estimating the Foreign-born Population on a Current Bas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

Parekh. Bhikhy, Political Theory and the Multicultural society. [http://www. redicalphilosophy. com](http://www.redicalphilosophy.com)

Seyla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7. 1996.

Soysal, Y.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Vertovec. S,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96.

ABSTRACT

Improving the Supporting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Kim Kae Sun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I examined the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present condition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In detail, I studied the reality of preparation of our community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for social intergration and right promotion of immigrants, then gain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foreign cases which experienced the multicultural society earlier then Korea. Furthermore, I found out the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political system has and to improve effectiveness in order to progress for out society to the true multicultural society.

If Korea is to adopt multicultural policy practically, beyond just acknowledging and tolera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reality, then the principle of multiculturalism and the effect that has on the Korean ethnic identity have to be discussed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ism policy has to be decided.

The interest toward multicultural family has to be mainly shown not by government but by multicultural families themselves, and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family, not only individual effor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a marriage, but also social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right union of two different society and culture are essential. Especially, change in basic attitude is required for Korean society and Koreans to have mature awareness having a fair viewpoint toward 'difference'.

The problem of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are first, the insufficiency in policy of department in charge which chimes in well with the object, Second, the need for customized administration support service police and third, overlapped and insufficient fund support.

To improve the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We have to establish a department in charge which is combined for systematic, integral national support and let it be responsible with the work, and establish a system of sharing responsibility and cooperation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lower the possibility for similar/overlapped support among departments. Secondly, customized support policy which is differentiated by focusing on consumers and the development and the supply of various support enterprises are needed.

Some of these measures are undergoing, and some are just being planned, and still others are being tried for demonstration. The time has come for rearranging and readjus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is needs to be examined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o be the effective and right policy to our society,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the desire/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y is the precious resource to our society and their second generation is members of our society who are to perform their duty to go to military and pay their taxes as the center of our socie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need to build institutional system through cooperation, and for this I expect the way to improve suggested in this research be of great help.

Recently the awareness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is spreading, therefore the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has to be extended from focusing on only the multicultural families to including foreign workers and North Korean detectors.

